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 인권선언

416인권선언 추진단 1차 전체회의

이제
"인권" 할
시간

세월호 참사
이후
다른 사회를 원하는
우리,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감각으로부터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
함께 쓰기
전국 곳곳에서 펼쳐질
플뿌리토론의 시작을 알립니다!

일시 | 2015년 7월 11일(토) 오후 1시
장소 | 수문회관 (서울 종로구, 안국역)
주최 | 4.16연대

자 료 집 목 차

추진단 1차 전체회의 진행 순서	4
회의 및 토론 자료	5
들어가며 :: 416인권선언운동을 제안하며	5
풀뿌리 토론 :: 풀뿌리 토론 매뉴얼	8
416인권선언 추진 계획 :: 다시, 인간의 존엄을 선언하자	16
추진단의 역할 :: 추진단이 되면은?	19
함께해요 :: 인권선언문을 제정하면서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일들	20
결의문 ::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 추진위원 결의문	23
참고 자료	24
토론자료 :: 416인권선언 함께 만들기 위한 토론자료	24
교양자료 :: ‘존엄’, ‘안전’, ‘인권’, ‘선언’	33
교양자료 :: 세계인권선언, 사파티스타 민족해방군 선언, 비정규직없는 세상을 위한 사회헌장	43
추천도서 :: 인권관련 추천도서 및 추천 글	53
416인권선언 추진단 명단	57

416인권선언 추진단 1차 전체회의 순서

■ 등록 | 13:00~

■ 개회 | 13:30~

목상 및 416인권선언운동 3인 3색 제안

■ 토론 | 14:00~

416인권선언 풀뿌리 토론

■ 휴식시간 | 15:40~

■ 논의 | 16:00~

416인권선언 추진 계획 논의

- 풀뿌리 토론 결과 나눔
 - 미수습자 가족 발언
 - 추진 계획 및 활동 제안과 모듬별 논의
 - 추진단 결의문 낭독
-

■ 폐회 | 17:30~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운동을 제안합니다



세월호 참사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모두 말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의 사회는 달라져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약속을 지킵시다. 참사 이전의 사회와 단절을 선언하고, 참사 이후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을 함께 밝히자고 제안합니다.

1.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는 현실을 기억합시다!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는 모두 약속했습니다. 끝까지 잊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다시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2014년 4월 16일 아침,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했고, 아직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를 포함한 304명의 희생자가 우리 곁을 떠났다는 것 외에 우리는 아직 함께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가족과 국민이 따로 또 같이 1년이 넘는 시간을 겪으며 우리는 수많은 경험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억울함, 분노, 절망으로 우리를 내몰았던 경험들 말입니다. 그것에 이름을 붙여본다면, 인간의 존엄이 훼손된 경험이라고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저 안타깝고 슬프고 화나는 일을 겪은 것이 아니라 인권을 침해하는 하나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2. 사회 구조가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합니다!

존엄을 훼손하고 무시한 결과, 참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사회가 만들어졌고, 여전히 그 사회는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기업은 생명과 안전보다 이윤을 앞세우고, 정부는 국민의 권리보다 권력의 보호에 골몰하며, 어떤 이들은 공감과 연대보다 모욕에 익숙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개개의 동떨어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서로 맞물려 우리를 억압하는 힘을 더욱 발휘하는 구조임을, 우리는 목격하고 확인했습니다. 이런 구조가 세월호 참사를 낳았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미래에도 우리의 존엄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 역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달라져야 하는 것은 몇몇 문제에 그치지 않는 구조 자체입니다. 혼자서 조심하고 피한다고 해서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낳은 구조가 견고할수록 우리는 더욱 손잡고 연대해야 합니다.

3. 무엇이 안전인지, 인간의 존엄에 기초하여 우리가 말합시다!

누구나 존엄과 안전을 누릴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구할 안전은 어떤 가치인가요? 누군가 나서서 지켜주기를 바라며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남기 위해 제각각 경쟁하며 구매하는 것도 아닙니다. 위험을 줄이고 참사의 피해를 줄이는 것은 인권의 문제입니다. 취약한 개인이나 집단에 더욱 큰 위험을 떠넘기는 구조에 맞서 근원적인 평등을 이루는 것이 안전입니다. 우리의 삶을 구속하려는 공포와 비참으로부터 함께 자유로워지는 것이 안전입니다. 구조적 억압을 제거하기 위해 공동체에 참여하며 실천하는 연대가 안전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루려는 안전이 무엇인지 충분히 따져보지 않는다면 자칫 우리가 원하는 정반대의 결과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국가가 특 하면 말해온 안전은 오히려 우리의 자유와 평등, 연대를 해쳐왔기 때문입니다.

4.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권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수많은 참사를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잊어왔습니다. 언제나 비슷한 문제들이 드러났지만, 못이긴 척 정부가 나서서 누군가를 엄벌에 처하겠다고나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했다고 하면 그런가보다 하고 잊었습니다. 물러서지 않고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는 피해자들이 있으면 보상이 부족한가보다 하고 남 문제로 여겼습니다.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진실과 정의, 배상과 재발방지에 대한 피해자의 권리는 거래나 선택을 강요당해서는 안 됩니다. 실종자, 희생자, 생존자와 그 가족들, 그들을 돕거나 피해를 막기 위해 나섰던 사람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았던 우리가 어느새 우리를 위협으로 내몰고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권리가 곧 우리의 권리임을 잊지 않고 끝까지 함께 행동해야 합니다.

5. 다른 사회를 열기 위한 우리의 책임은 우리의 권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안한 마음을 가슴 한편에 지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미안함은 무엇에 대한, 무엇을 향한 미안함일까요? 혹시 누군가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의 무게를 대신 나눠 진 채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인권의 시선으로 책임을 밝혀야 합니다. 인권은 인간의 존엄이라는 기초 위에서 있는 꽃대입니다.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실현하지 못하는 정부는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인권 침해의 구조에 개입된 기업, 언론 등의 행위주체들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것이 정의입니다. 우리의 미안함은 우리를 짓누르는 상처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다. 책임져야 할 자가 책임질 때, 우리는 참사로부터 자유로운 사회에서 우리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책임을 묻는 행동은 우리의 정치적 책임이자 권리입니다.

6.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은 행동입니다!

권리는 선물이 아닙니다. 시대와 장소를 넘어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싸워온 역사가 인권입니다. 국제인권법과 헌법이 이미 제시하는 수많은 권리들은 누군가의 치열한 투쟁이 남긴 기록입니다. 앞서 겪은 사람들의 증언에 귀 기울이며 우리 스스로 목소리 내기를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달라져야 할 것을 고집하는 세력에 경고하며 우리의 권리를 현실에 새깁시다. 모두의 생명과 안전, 자유로운 표현과 결사, 인간다운 노동과 생활 등 우리 스스로 인권의 목록을 써내려갑시다. 모르는 것이 있다면 함께 배우면 되고 부딪치는 의견이 있다면 함께 토론하면 됩니다. 세상을 바꿔온 것은 인간의 존엄에 대한 감각을 놓치지 않으며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소박한 상식과 작은 행동이었습니다. 함께 선언하는 우리가 바로 살아있는 인권입니다.

2016년 4월 우리 모두의 이름으로 인권선언을 선포합시다.

그때까지 함께 선언할 사람들을 조직합시다.

416인권선언운동의 취지와 목적을 알리는

작은 간담회를 열어 첫발을 떼어주십시오.

416인권선언 풀뿌리 토론 안내 매뉴얼

●

1. 이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2. 이렇게 진행해보세요.
3. 이런 점을 미리 고려하세요.
4. 이렇게 결과를 정리해주세요.

1. 이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풀뿌리 토론은 2016년 4월 선포하려는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을 함께 만들어가는 자리입니다. 2014년 4월 16일 이후, 다양한 사회구성원이 각자의 위치와 조건에서 세월호 참사를 겪었습니다. 각자의 경험에는 416인권선언의 주요 키워드인 존엄, 안전, 인권, 선언 등이 이미 있습니다. 풀뿌리 토론은 각자의 경험과 기억을 생생한 말로 나누며 우리가 함께 누려야 할 권리들을 길어 올리는 자리입니다. 이것은 세월호 참사와 그동안 반복되어 온 재난, 참사 등에서 벗어나 안전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달라져야 할 것을 확인하고 토론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풀뿌리 토론을 통해 이와 같은 이야기가 촉발되고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 우리는 세월호 참사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달라져야 한다고 말해왔습니다. 무엇이 달라져야 하고,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 ‘인간의 존엄’을 통해 토론해봅시다. 인간 존엄성에 대한 공통의 감각을 확인하고, 각자의 경험에 깃든 다양한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 각자의 시선으로 마주했던 ‘4.16’의 의미를 공통의 경험으로 만들어가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마다 제안하고 싶은 바를 함께 선언해야 할 ‘인권’의 말로 제안해주세요. 토론을 거치며 권리들이 엮이고 연결되어, 모두의 약속으로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 존엄, 안전, 인권, 선언의 의미가 각자의 말하기와 듣기를 통해 풍부해지고, 앞으로 행동과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자극과 영감을 얻는 과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쟁점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더욱 깊은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는 소중한 실마리일 것입니다.

* 위와 같은 풀뿌리 토론의 목표를 다양한 형식의 프로그램으로 진행해도 됩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펼쳐갈지 막막한 분들은 아래 안내되는 기본 프로그램을 참고하세요.

<풀뿌리 토론 기본 프로그램의 흐름>

1) 추모의 시간 (5')

함께 묵상해주세요

2) 416인권선언운동 소개와 풀뿌리 토론 제안 (10')

참여자들에게 416인권선언운동의 취지를 알리고 토론을 제안해주세요.

* 416인권선언 풀뿌리 토론용 영상이 있으니 활용하세요.

3) 풀뿌리 토론 프로그램 진행 (80')

제시된 세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해주세요.

① “세월호 참사를 떠올릴 때 나의 느낌/감정은 ○○이다. 왜냐하면 ~ .”

② “세월호 참사 발생 시점부터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이건 쯤 아니지 않나’ 싶었던 장면/현상/문제는 ○○ 이다.”

③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약속이 인권이다. 2번에서 말한 문제들을 바꾸기 위해서 권리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은 ○○○할 권리이다.”

*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토론수칙을 공유해주세요.

* 진행하면서 토론 내용을 메모해두거나 결과를 기록해줄 사람을 미리 정해두세요.

4) 마무리 (10')

토론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갈무리하며 권리 풍선을 함께 만들고 마무리해주세요.

* 참여자들의 소감을 듣거나 후속 활동에 대한 제안을 받으면 더욱 좋습니다.

2. 이렇게 진행해보세요.

<준비물 및 사전 체크 사항>

- 모둠별 자리배치. 각자 고른 발언 기회를 갖기 위해 모둠 인원은 6~8명 정도로.
- 포스트잇(7.6cm*7.6cm 이상, 세 가지 색깔이면 질문 별로 나눠줄 수 있어요)
- 화이트보드, 보드마커, 지우개(참여자들이 적은 포스트잇을 화이트보드에 붙여놓고 함께 보면서 토론을 진행할 수 있어요)

<참여자들과 나눌 질문 3가지>

- 1) “세월호 참사를 떠올릴 때 나의 느낌/감정은 oo이다. 왜냐하면 ~ .”
- 2) “세월호 참사 발생 시점부터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었던 장면/현상/문제는 oo 이다.”
- 3)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약속이 인권이다. 2번에서 말한 문제들을 바꾸기 위해서 권리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은 ooo할 권리이다.”

<진행 방식>

1) 질문은 한 번에 하나씩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각자의 답을 포스트잇에 적는 시간을 가진 뒤 모둠 안에서 돌아가며 발표를 합니다.

2) 첫 번째 질문에 대한 공유가 다 끝난 뒤에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다시 각자 생각할 시간을 갖습니다. 두 번째나 세 번째 질문에서는 하나 이상의 답을 적고 싶은 참여자가 있을 수 있으니 포스트잇을 여유 있게 준비해주세요.

3) 세 번째 질문에 대한 토론까지 모두 마치고 나면, 노란종이배 이미지를 활용해 참여자들과 함께 권리풍선을 만들어주세요.

4) 권리풍선을 들고 인증샷도 찍어주세요. (권리풍선으로 띄울 노란종이배 이미지는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어요.)

<질문 해제>

1) “세월호 참사를 떠올릴 때 나의 느낌/감정은 oo이다. 왜냐하면 ~ .”

이 질문의 의도는 인권선언에 대한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개인적 경험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말문을 틀 수 있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분노’든 ‘무기력’이든 ‘슬픔’이든 ‘미안함’이든, 서로의 감정과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을 통해 세월호 사건이 공통의 경험이었다는 점을 재확인합니다. 자신이 떠올린 느낌과 감정의 기원을 떠올려보면서 자연스럽게 2번 질문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2) “세월호 참사 발생 시점부터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이건 쯤 아니지 않나’ 싶었던 장면/현상/문제는 oo 이다.”

이 질문은 세월호가 단순 사고가 아닌 인권침해의 문제임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지금까지 보거나 듣거나 겪은 일 중에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지점을 찾고 어떤 가치가 부재했는지를 살피기 위한 질문입니다.

가령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묻지 않고 “이건 쯤 아니지 않나”로 물은 이유는 문제의 경중을 위계화하거나 사회적으로 자주 언급됐던 전형적인 지적들로 논의가 한정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의도에서입니다. 이 질문에 “기레기 언론”이란 답이 나올 수도 있지만 “가방에 노란 리본을 다는 것도 눈치 보였던 일”처럼 좀 더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장면이 나왔을 때 이후 3번 질문에서 권리를 찾는 논의가 좀 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3)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약속이 인권이다. 2번에서 말한 문제들을 바꾸기 위해서 권리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은 ooo할 권리이다.”

이 질문은 416인권선언에 담을 수 있는 아이디어와 구체적 표현을 함께 찾기 위한 질문입니다. ‘인간의 존엄’에 대한 감각은 이미 우리 모두의 경험 속에 깃들어있습니다. 혹시 인권이란 것 자체가 아직 생소한 분들에게는 인권이 거창하고 무거운 뭔가가 아니라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는 자명한 원칙을 현실에서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약속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이라는 점, 인간의 존엄성은 법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구성할 수도 있다는 점, 그런 맥락에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작업이 세월호 참사를 돌아보며 인간의 존엄에 대한 공통의 감각을 버리고 인권을 새롭게 재구성하는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인권이라고 했을 때 가령 “집회 및 결사의 자유”와 같이 법전에 나올 법한 용어를 먼저 떠올리게 되기도 쉬운데 그러면 사람들의 상상력이 제한될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들에게는 ‘표현의 자유’란 단어보단 ‘말대꾸했다고 선생님한테 혼나지 않을 권리’가 그이들의 삶에 더 가닿는 말인 것처럼, 416인권선언에 들어갈 권리를 찾는 작업도 앞서 1,2번 질문에서 답했던 각자 이야기의 연장선상에서 자기 입에 붙는 말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2번 질문에서 3번 질문의 답을 이끌어내는 작업이 생각보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바로 권리로 넘어가기 어려워하는 분들이 계시면 질문의 의미를 풀어서 표현해줄 수도 있습니다. “2번에서 나온 문제와 관련하여 무엇이 바뀌면 좋을 것 같은지?”, “2번에서 제기된 문제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하는 태도/~한 제도나 구조가 있다면 혹은 없어진다면 문제 상황을 바꿔낼 수 있을 것 같다.” 이와 같은 징검다리 질문을 건네면서 “그렇다면 그걸 바꾸기 위해 서로 인정하고 함께 약속해야 할 권리들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라는 질문으로 이어간다면 참여자들이 권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번 질문에서 “영혼 없는 공무원과 경찰”을 누군가 얘기했을 때, 공무원과 경찰들이 그렇게 무심하게 상부의 명령에만 충실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떠올려볼 수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 ‘감수성 부재’와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 등이 있을 텐데, 그렇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로 ‘양심의 자유 및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권리’가 나올 수 있고, “상명하복의 권위적인 학교문화가 없다면 바뀔 수 있을 것이다”를 찾은 뒤 이로부터 ‘공무원들이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가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권리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면 연결된 권리들이나, 해당 권리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권리들이 더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권리가 실현되기 위해선 어떤 사회적 변화가 필요할까요? 혹은 다른 어떤 권리의 도움이 필요할까요?”라고 물어보면서 논의를 심화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2번 질문에서 “‘가만히 있으라’고만 했던 선내 방송”이 제시됐을 때, 3번 질문에서는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정확하고 신속한 안내를 받을 권리”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안내하기 전까지 아무 것도 알 수 없는 상황은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에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보 공개를 요구할 권리”, “안전에 위협이 되는 정책이나 제도를 바꿀 권리” 등의 이야기들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우리가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강요받아온 현실을 떠올리며 “대들고 따질 권리”, “가만히 있지 않고 행동하기 위해 모여서 말할 권리”와 같은 제안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권리란 단어로 표현이 되다보면 추상적인 단어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럴 땐 참여자가 발표할 때 들리는 구체적인 키워드들을 진행자가 적어두었다가 그 단어에

대해 더 논의를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권리를 적다 보면 ‘좋은 건 다 권리’인 건가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좋은 것, 바라는 것을 그냥 모아놓으면 그건 희망사항이거나 이상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권리는 각자의 입장과 맥락 속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이야기들이지만 진행자가 적극적으로 질문을 건네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혹시 제안된 권리 중 가웃겨려지는 권리들은 없나요? 또는 다른 관점에서 짚어보면 좋을 권리들은 없을까요?” 하나의 결론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서로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충분히 잘 듣고 나서 따로 결과를 정리해주세요.

3. 이런 점을 미리 고려하세요.

플뿌리 토론 참여자들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느끼고 고민했던 이야기들을 충분히 나눌 수 있도록 수칙을 미리 정하는 것도 좋습니다. 토론 수칙은 토론 구성원이 주어진 시간 안에 이야기를 잘 나누기 위해 함께 지키면 좋은 몇 가지 사항들입니다. 물론 수칙은 수칙일 뿐이지만, 이를 통해 416인권선언의 주요한 기초가 될 모두의 경험과 생각들이 잘 모일 수 있습니다. 아래의 수칙을 참고하세요.

👉 토론을 진행하는 진행자의 질문/요청을 잘 숙지한 후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 토론 구성원들의 다양하고 충분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구성원 스스로 발언 내용을 메모 등의 방법으로 정리하면 좋습니다.

👉 의견 발표 전에, 포스트잇에 발언할 핵심 주제어(키워드)를 적고, 제시합니다.

👉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존중합니다. 토론 중 스마트폰 사용은 자제 바랍니다.

👉 토론에 참여하는 다른 이의 생각이 자신과 다르다고 하여 배척하거나, 강요하지 않습니다.

👉 참가자 모두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1가지 주제에 대해 각자 최대 3번의 발언권을 갖도록 합니다.

4. 이렇게 결과를 정리해주세요

풀뿌리 토론을 진행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더 힘을 내주세요. 전국 곳곳에서 진행된 풀뿌리 토론 결과가 잘 모일 때 우리는 함께 416인권선언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토론을 진행하는 동안 아래 빈칸을 활용해 메모를 해두시고 토론이 모두 끝난 후 결과를 정리해서 416인권선언 홈페이지의 풀뿌리 토론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사진도 함께 올려주세요.

* 토론에 참여한 분들의 이름과 이메일주소는 416declaration@gmail.com 으로 보내주세요!

<풀뿌리 토론 개요>

* 언제_	
* 어디에서_	
* 누구와_	(어떤 공동체에서 함께 했는지, 토론 참여 인원은 몇 명인지)
* 기록자	
* 만약 기본프로그램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풀뿌리 토론을 진행했다면 프로그램도 간략히 소개해주세요.	

<풀뿌리 토론 결과>

1. 풀뿌리 토론에 참여한 분들은 세월호 참사를 어떤 감정으로 겪었나요? 각자의 경험을 표현한 키워드를 적어주세요.

2. 풀뿌리 토론에 참여한 분들과 짚어본 문제들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이걸 좀 아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럴 수는 없다 등 참여자들과 함께 찾은 장면이나 현상, 문제의 키워드를 적어주세요.

3. 풀뿌리 토론에 참여한 분들은 어떤 권리들을 제안했나요? 참여자들 각자가 적은 권리뿐만 아니라 그것을 제안하게 된 이유나 각자의 이야기도 전해주세요.

3-1) 참여자 모두가 공감하거나 공통적으로 말한 권리들은 무엇인가요?

3-2) 참여자가 제안한 권리 중 가웃겨러지는 권리들은 무엇이었나요? 제안의 이유나 수공하기 어려운 이유로 어떤 토론이 진행되었나요?

3-3) 참여자들이 앞서 짚었던 문제들 중 권리로 주장하기 어렵거나 막막한 채로 남은 문제들은 무엇인가요?

* 풀뿌리 토론을 마친 후 함께 만든 권리풍선과 참여자들의 사진을 한 장 이상 보내주세요.

<풀뿌리 토론 +@>

* 416인권선언 홈페이지 메시지 란에 소감이나 후기를 남겨달라고 요청해주세요.

* 직접 풀뿌리 토론을 열겠다는 참여자가 있으면 추진단 등록을 안내해주세요.

* 기본 프로그램이나 후속활동에 대한 의견이나 제안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추가 토론이 필요하거나 간담회, 인권교육 등에 대한 요청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다시, 인간의 존엄을 선언하자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 인권선언 추진계획

1. 416인권선언운동의 목적과 방향

1) 안전사회를 만들어가는 운동

세월호 참사 이전과 달라져야 한다는 약속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지 밝히는 사회적 약속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인간의 존엄을 기초로, 진실과 안전을 추구해가는 사회 운동을 만들어간다.

2)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는 운동

아래로부터의 선언을 만든다. 세월호 참사를 겪은 우리 스스로가 인권의 저자와 주체가 되어 함께 선언해야 할 권리들을 제안한다. 여러 운동과 연계해가며 구체적인 행동들로 이어간다.

3) 권리와 책임을 밝히는 운동

풀뿌리 토론에서 제안된 권리들을 모아, 세월호 참사의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또 다른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인권선언을 만든다. 구속력을 갖는 법제도 변화 등의 시도로 이어간다.

2. 416인권선언운동의 진행 경과와 이후 추진계획

1) 인권선언운동 제안과 준비 (~2015.5.)

- 2014.12.10. 국민대책회의, 추진대회 열어 인권선언운동 제안. 이후 기획팀 구성하여 추진.
- 2015. 3.12. 준비회의 열어 풀뿌리 토론을 중심으로 한 추진계획 논의. 이후 추진단 구성 시작.
- 2015. 4.14. 1차 원탁회의 열어 풀뿌리 토론의 기초자료가 될 인권선언문 토론.
- 2015. 5. 9. 2차 원탁회의 열어 취지와 목적에 대한 토론 및 이후 풀뿌리 토론 자료 검토.

2) 인권선언 추진단 등록 (~2015.6.)

- 416 인권선언 추진단 : 각 지역, 공동체 등에서 최소 1회의 풀뿌리 토론을 열고 진행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 홈페이지에 이름, 연락처, 토론 예정 모임 등을 기입하여 온라인으로 등록.

3) 추진단 1차 전체회의

- 7월 11일(토) 오후 1시, 수운회관
- 전국에서 추진단이 모이는 회의. 416인권선언을 함께 만들기 위한 첫 토론 진행.
- 풀뿌리 토론 기본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이후 토론의 감각과 이해를 나누는 시간과 인권선언의 추진 계획에 대해 공유 및 논의하는 시간으로 구성.

4) 전국 곳곳에서 풀뿌리 토론 (2015.7~9.)

- 추진단에 등록된 추진위원은 각자의 지역, 공동체 등에서 함께 이야기 나눌 사람들을 모으고 풀뿌리 토론을 진행하여 결과를 모아준다.
- 토론을 통해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각자의 경험을 공통경험으로 재해석하고 함께 선언해야 할 권리의 내용과 함께 행동 과제에 대한 고민도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 필요한 경우 심화 토론이나 간담회, 강연, 교육 등을 전후로 진행한다.
- 풀뿌리 토론 결과는 홈페이지 통해 게시하고 공유하며, 추진위원 중 자원하는 추진위원들로 구성된 예비성안팀은 정기적으로 쟁점 토론을 진행.

5) 추진단 2차 전체회의 (2015.10~12.)

- 9월까지 마친 풀뿌리 토론의 결과를 모아 10월에 본격적인 성안 회의 진행.
- 추진단 2차 전체회의(11월 28일 예정)에서 416인권선언에 담겨야 할 내용을 최종 확정하고 이후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하여 발표.

6) 대중적 인권선언운동 (2016.1~3)

- 범국민서명운동 등 진행. 풀뿌리 토론에 참여하지 못했던 시민들이 416인권선언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획사업 추진.
- 풀뿌리 토론을 진행했던 단위들에서 저마다의 선언 또는 행동계획을 발표할 수도.

7)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 선포 (2016.4.)

- 2주기를 맞는 2016년 4월, 모두의 이름으로 416인권선언을 선포.
- 후속과제 등에 대한 제안.

※ 416인권선언을 제정하면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일들 (첨부 글 참조)

1) 인권에 대해 배우고, 제안문도 함께 써요!

- ✓ 416인권선언운동에 함께 하자는 제안문을 써주세요.
- ✓ 인권을 함께 공부해요. 각종 자료나 강연, 교육 등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2) 인권선언에 포함된 권리를 현실의 운동으로 만들어요!

- ✓ 존엄과 안전을 위한 조례 제정과 입법운동들이 있습니다. 알 권리 조례나 “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정부 책임자 처벌법” 제정에 함께 해주세요.
- ✓ 말하고 모이고 행동할 권리를 지켜나가요. 집회시위 처벌에 맞서는 공동대응에 함께 해요.
- ✓ 더 많은 권리를 ‘운동’으로 만들어요.

3) 인권선언을 널리 퍼뜨려요!

- ✓ 더 많은 시민들이 인권선언에 관심을 갖도록 온라인 홍보, 거리 캠페인 등으로 알려주세요.
- ✓ 지역별, 영역별, 단체별로 우리만의 인권선언을 만들어요.

3. 인권선언 추진단 운영

1) 416인권선언운동 추진 구조

- 416연대 산하 특별기구로 416인권선언 제정위원회 구성. 인권선언 추진계획 논의 및 점검. 416연대 운영위원회 보고 및 의견 수렴.
- 416인권선언의 추진 기구로 전국 풀뿌리 토론 진행 및 인권선언 내용 확정을 위한 추진단 구성
- 추진단 내 집행을 위한 실행팀 구성. 인권선언 추진 세부계획 수립 및 점검, 실행팀 내 역할 분담을 위한 단위 구성.

2) 추진단 등록 및 운영

- 1차 전체회의 이후로도 풀뿌리 토론을 주최하고 2차 전체회의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등록을 열어놓을 예정.
- 기본적인 안내 및 자료 등은 메일 통해 전달.
- 격주 웹진 발행. 각종 후기 및 진행 경과, 추진단 인터뷰, 읽을거리 등이 실림.
- 인권선언 제정과정에서 필요한 요청 사항이나 문의 등은 416declaration@gmail.com

3) 풀뿌리 토론 진행 상황 공유

- 416인권선언 홈페이지 풀뿌리 토론 게시판 통해 진행 상황 및 토론 내용 공유.
- 416인권선언 토론의 길잡이가 될 수 있는 각종 자료를 홈페이지 등 통해 제공.

4. 논의 요청 사항

- 1) 오늘 진행한 풀뿌리 토론에 대한 소감이나 의견을 나눠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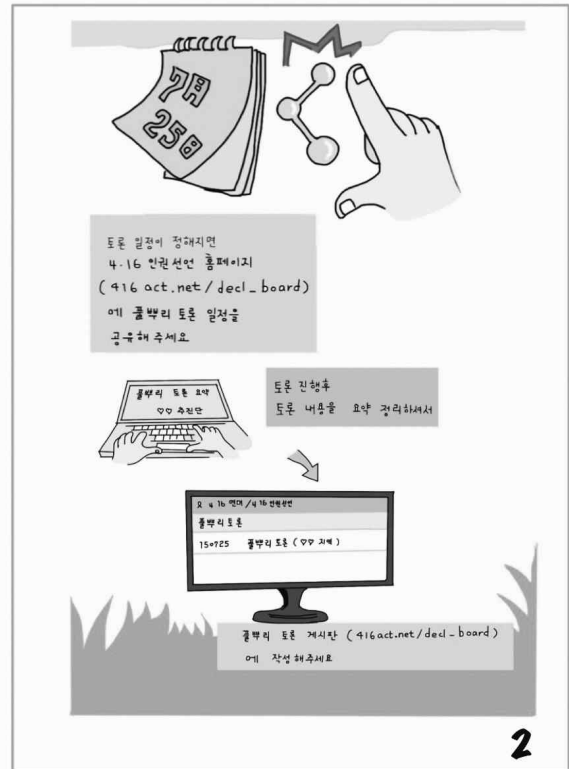
풀뿌리 토론 기본 프로그램은 7~9월에 열릴 풀뿌리 토론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좋았던 점이나 아쉬웠던 점 등을 말씀해주시면 이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2) 풀뿌리 토론 외에 함께 하면 좋은 일들이나 요청할 사항이 있는지 의견을 나눠주세요.

지역이나 부문에서 다양한 활동과 연계할 수도 있을 테고, 인권선언을 알리기 위한 여러 홍보방안도 있을 듯합니다. 각자 떠오른 것들을 제안해주시면 추진단 모두와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행팀에 요청할 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 3) 그 외 추진단에 참여하는 분들과 나누고 싶은 의견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추진단의 역할 :: 추진단이 되려면?



인권선언문을 제정하면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일들



1. 인권에 대해 배우고, 제안문도 함께 써요.

○ 제안문 쓰기에 함께 해주세요.

- 4.16인권선언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인권선언이 과연 사회적으로 변화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인권선언운동에 함께하기를 요청하는 '제안문'을 함께 써주세요. 여러분의 언어로 다양한 '제안문'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4.16 이후에 자신이 경험한 인권침해의 사례를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여 "인권선언 제안문"을 만들고 있습니다. 4.16참사의 희생자 가족 분들도 '인권선언 제안을 위한 글'을 함께 작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인권선언 제안문' 작성에 함께 해주세요.

- 이미 몇분의 제안문은 언론 기고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권선언 추진단에서 만드는 4.16인권선언 웹진에도 다양한 제안문이 실릴 예정입니다. 더 많은 분들이 추진위원이 될 수 있도록 '제안문 쓰기'에 함께 해주세요.

○ 인권을 함께 공부해요.

- '세계인권선언문'은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 후 인간의 존엄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작성되었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은 비록 강제력이 없는 선언이지만 각 국가들의 헌법의 기초가 되기도 하고, 세계적으로 '인권'이라는 문제의식을 확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인권선언은 이처럼 큰 참사와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져왔기 때문에 그 안에 인권의 역사와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인권선언에서 다루는 다양한 개념들에 대한 이해도 필요할 것입니다. 인권선언 제정운동을 계기로 하여 인권에 대해 더 잘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인권선언을 함께 공부할 수 있습니다.

- 인권에 대해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소모임을 하고자 하거나 지역에서 인권 강좌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인권선언 추진단 실행팀에서 각종 자료와 커리큘럼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고양지역에서는 지역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양인권학교'를 연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과 함께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2. 인권선언에 포함된 권리를 현실운동으로 만들어요.

○ ‘생명의 존엄과 안전’을 위한 조례제정과 입법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 인권선언에 포함되어 있는 ‘안전할 권리’. 그것은 국민안전처가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 기업이 지켜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참여하고 결정할 권리가 있어야 하고, 알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 이런 권리를 우리 모두의 권리로 만들기 위해서 활동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지역에서 이런 활동을 통해 안전의 권리를 조금씩 확보해나갈 수 있습니다.

- 인천에서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이 조례는 그동안 시민단체들이 힘을 합해서 노력해온 소중한 성과입니다. 유해화학물질 사용정보와 대응방법에 대해서 노동자와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화학물질 관리위원회에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한 조례입니다. 지역의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우리 주변의 위험요소에 대해서 ‘알고’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는 조례를 만들어나가는 일을 우리 지역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 지금까지 많은 참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책임자가 제대로 처벌된 적은 없었습니다. 돈 때문에 참사를 일으킨 기업과 이런 참사가 벌어지도록 책임을 다하지 않은 정부와 공무원에게 합당한 처벌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에서는 “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정부 책임자 처벌법”을 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권선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임자처벌’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제정하기 위한 대중적 서명운동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 말하고 모이고 행동할 권리를 지켜나가요.

- 인권선언 제정운동을 하면서 우리는 ‘말하고 모이고 행동할 권리’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세월호의 진실을 알고자 하는 이들을 탄압해왔습니다. 물대포와 최루액 등 집회방해, 연행과 구속, 소환장 남발로 우리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진실을 알 권리, 그 진실을 말할 권리를 위해서는 ‘말하고 모이고 행동할 권리’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런 권리를 지키기 위한 행동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 4.16연대에서는 집회시위로 인해서 사법처리를 당하게 된 이들의 공동대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률적 지원만이 아니라 우리의 정당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법정 싸움도 당당하게 임하기 위해 공부도 하고, 법률가들과 대응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법률기금도 모을 것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 행동에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 더 많은 권리를 ‘운동’으로 만들어요.

- 4.16 참사 이후에 우리가 느꼈던 많은 고민들과 분노를 인권의 언어로 다시 풀어내고, 그것이 우리의 권리가 되도록 하는 작은 실천이 매우 소중한 때입니다. 각자 속한 공간에서 우리가 만들어낸 인권의 항목들을 다시 권리로 전환시키는 다양한 실천이 필요합니다.

- 4.16 인권선언을 제정하는 운동을 하면서 어떤 이들은 ‘평등한 애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만으로 두 분 선생님을 여행자보험에서도 제외했고 순직 인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순간조차도 차별받는 이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서명운동이 시작됩니다. 민간인 잠수사 사망 이후에 오히려 동료 잠수사가 과실치사로 기소되자, 이에 분노하여 해경의 책임을 묻는 고발운동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자발적인 활동이 안전과 애도와 보상에서 평등할 권리라는 인권 항목을 구체화합니다.

- 또한 4.16 인권선언에서는 언론의 책임을 이야기합니다. 세월호참사에서 오보와 명백한 왜곡보도, 정부 이야기 베껴쓰기라는 언론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돈'을 흔들며 진실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왜곡한 것도 언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방송사 앞에서 1인시위를 하면서 왜곡보도에 항의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인권선언'에서 이야기하는 언론의 의무와 책임을 구체화하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3. 인권선언을 더 널리 퍼뜨려요.

○ 더 많은 시민들이 인권선언에 관심갖도록 알려요.

- 인권선언에 대한 풀뿌리 토론이 7월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풀뿌리 토론에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해야 하겠지만 이것은 권선언문을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닐 것입니다. 4.16참사를 인권의 언어로 이야기하고 더 많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또 다른 우리의 역할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인권선언운동의 내용을 알리는 선전물을 많은 시민들에게 배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인권선언'의 내용만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4.16참사 이후에 우리가 무엇을 바꾸고자 했는지, 우리는 무엇을 미안해했었는지 돌아보고 사회를 조금씩 바꿔나가자는 제안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스티커 설문 등을 통해서 존엄과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보장 받아야 할 권리에 대한 의견을 모아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지역별로, 영역별로 인권선언을 만들어요.

- 각 지역별로 인권선언에 대한 토론을 하고 토론된 내용을 모아서 하나의 인권선언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권선언은 우리 모두의 인권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인권선언은 대중적인 서명운동을 통해서 시민들 모두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인권선언이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하나의 해설문이 나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자신이 처한 공간에서, 자신이 일하고 있는 공간에서 그 인권선언이 어떻게 해석되고 어떻게 지켜져야 하는지를 구체적인 언어로 만들어나가는 것이 바로 자신의 언어로 인권선언을 해석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 인권선언은 보편적인 이야기를 중심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소수자의 목소리, 청소년의 목소리, 직접적인 피해당사자의 목소리, 노동자들의 목소리 등이 생생하게 담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영역별로, 각자가 속한 공간에서 인권선언운동의 취지와 의미에 맞는 인권선언을 만들어보는 운동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현재 가족협의회에서는 인권선언운동에 함께하시는 분들이 모여 유가족의 언어로 '인권선언' 쓰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몇 지역에서도 지역의 고민과 상황에 맞는 인권선언 쓰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인권선언이 이렇게 퍼지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려는 의지도 확대되면 좋겠습니다.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 추진위원 결의문

세월호 참사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우리는 이 말에 책임을 지기 위해 4.16인권선언 제정을 추진한다. 4.16인권선언은 한국 사회가 버려야 할 것들에 대한 단절의 선언이다. 달라지기 위해 다시 세워야 할 가치와 실천의 목록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선언이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 미수습자의 수습과 인양, 정의를 위한 배상의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 그리고 같은 맥락의 사건들을 ‘인권침해’로 명백히 규정한다. ‘인권침해’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확인과 인정은 모든 책임 논의의 출발점이다. 우리는 문제를 왜곡·축소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세력들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우리는 정부의 책임을 우선적으로 추궁하며 참사에 깊이 연루된 자들의 책임을 추적한다.

‘선언’은 주권자의 몫이다. 우리는 사회를 바꿀 권력이 우리 시민들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4.16인권선언은 종잇장 위에서 오가는 말들의 경연이 아니다. 죽은 이를 포함해 모든 참사의 피해자들이 계속 말하고 증언할 것이다. 전국 곳곳에서 펼쳐질 풀뿌리 토론은 잠들어 있는 권리들을 깨우고 우리의 몸을 일으킬 것이다. 인간의 존엄이 그 자리에 설 것이다.

더욱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할수록, 우리의 기억과 행동은 더욱 풍부하고 단단해질 것이며, 4.16인권선언은 현실을 바꿀 힘을 더욱 얻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4.16인권선언 추진위원인 우리는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1. 우리는 인간의 존엄이 모든 가치와 신념의 초석임을 확인하며 이 선언이 연대의 실천에 이르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2. 우리는 한 번 이상의 모임을 열고, 서로 배우며 토론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며 4.16인권선언을 만들어갈 것이다.
3. 우리는 적극적인 만남과 교류 속에서 4.16인권선언을 나누고 알릴 것이며, 선언의 정신에 바탕을 둔 행동과제와 실천 목록을 밝혀갈 것이다.
4. 우리는 더욱 많은 사람들과 함께 다시 2차 전체회의에 모일 것이며 4.16인권선언이 모두의 선언이 되도록 책임을 다할 것이다.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평등하며, 존엄하다.

2015년 7월 11일
4.16인권선언 추진단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 인권선언 함께 만들기를 위한 토론자료

1. 416 인권선언제정을 위한 전국단위 토론을 제안하며

416참사는 우리에게 ‘우리가 인간이긴 한 건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인간존엄의 가치를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버려지고 아픔은 조롱거리가 되었으며 진실요구는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빼돌어진 가치관으로 권력과 기업이 거대한 참사를 준비하는 동안 우리는 이러한 참사를 막기 위해 미리 손잡지 못했습니다. 인간 존엄가치가 무참히 짓밟히는 현장을 가슴이 멍멍해지도록 지켜보고서야 비로소 이제라도 힘을 모아 스스로를 지켜내야 한다는 절실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할 권리들 그러나 빼앗긴 권리들에 대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안전한 생활을 확보 받을 권리, 생명구조를 최우선으로 요구할 권리, 진실을 알 권리, 책임자 처벌을 요구할 권리, 물질적 배상과 정신적 위로를 받을 권리 등 인간다운 삶을 위한 권리가 그 어느 때 보다도 절박한 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치권, 기업, 그리고 일부 단체들은 416참사 이전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진실은 은폐하고 책임자의 반성과 사과는 없으며 같은 인간으로서 겨우 잡은 손을 거두어들이려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멈춘다면 또 다른 참사는 어디에선가 준비될 것이며 우리 중 누군가는 그 피해자가 될 것입니다. 또다시 정부와 언론의 최면에 우리의 마땅한 권리를 빼앗기고 살지 않기 위해 416 참사가 우리에게 상기 시켜준 인권에 대해 남녀노소 모든 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언어로 말할 때입니다. 우리의 권리를 우리의 목소리로 지킬 때입니다. 우리가 주인입니다.

2. 전문에 관하여

인권선언의 전문(前文, preamble)은 문서를 작성하게 된 역사적 맥락과 목적과 이유, 문서에 나오는 전체 내용의 간략한 소개 등을 담습니다. 성안팀은, 세월호 참사를 비롯한 참사에 대한 진단, 참사의 구조에 대한 인식과 분노와 비판, 그것을 변혁하기 위한 방향 등을 담아 아래의 예시와 같이 표현하였습니다.

1) 전문에 담겨야 할 내용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형식과 표현에 앞서, 선언을 선포하는 모두의 마음과 인식을 담아 꼭 드러나야 할 내용은 무엇일까요?

2)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어떻게 진단하며, 무엇에 분노하나요?

3)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교훈으로 무엇을 바꾸길 원하며, 그때 특히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요?

(예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고유한 생명과 존엄성이 모든 법과 제도, 가치와 신념, 계획과 실천의 기초임을 확인하며,
이 기초를 무시하고 훼손한 결과가 세월호 참사를 비롯한 여러 참사였음을 반성하고 통탄하며,
이윤을 최고로 여기고 인간을 물건처럼 다루는 세태를 지켜만 보고 내버려 둔 시민의 정치적 책임의 회피가 그 원인임을 인정하며,
여러 참사에서 드러났듯 우리를 덮치는 위험은 연대가 무너진 사회와 실종된 정치에 뿌리내리고 있기에, 이런 위험은 제각기 조심하고 피한다고 해서 빠져나갈 수 없는 근본적이고 거대한 것임을 절실하게 느끼며,
그간의 참사 책임에 대해 모든 게 운명이며 모두가 죄인이란 식으로 물타기로 대응해온 사이비책임론을 거부하며,
세월호 참사 등은 정부와 공직자 및 해당 기업이 인권침해의 가해자로서 책임져야 하는 사안임을 명백하고 단호하게 확인하며,
모든 참사의 피해자에게는 진실을 밝힐 권리, 정당한 절차를 통해 가해자를 처벌하고 징계할 권리, 배상받고 치유 받을 권리,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변혁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며,
인간 존엄성을 존중하기는커녕 점점 세계 짓밟으려는 한국 사회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세월호 참사와 같은 사건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에 귀 기울이며,
사회정의의 기초가 반듯하게 놓일 때에야 누구나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받고 지속 가능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음을 깊이 느끼며,
우리가 추구할 안전은 자유를 포기하는 대가로 거래하거나 제각기 살아남자는 경쟁 속에서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존중하는 환경 속에서 타인에 대한 관심과 연대로 공포와 비참에서 함께 자유로워지는 것이라 여기며,
모든 참사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존중하는 것은 애도와 기억, 사죄와 배상 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한국 사회를 반성하고 바꾸려는 실천임을 다짐하기에,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려는 노력을 기만하며 불의한 구조를 온존시키려는 세력에게 엄중히 경고하며,
모든 참사 피해자에 대한 존중과 한국 사회 구성원이 공유하는 책임을 담아 이 선언을 선포한다.

3. 원칙에 관하여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에는 구체적인 권리의 목록들이 포함됩니다. 우리의 선언에 담길 권리목록은 어떤 원칙에 입각하여 구성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일반적인 인권선언이 아니라 참사의 경험, 진실규명을 위한 투쟁, 이후로는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새로운 질서에 대한 고민을 담은 인권선언의 권리 항목을 구성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함께 고민했으면 합니다. 가령 ‘인간 존엄성 존중’을 원칙으로 내세웠다면, 그 아래 나오는 구체적인 권리들은 단순히 법적으로 주어진 권리만이 아니라 인간 존엄성에 호소하는 권리까지를 포괄합니다. 또한 ‘평등의 원칙’은 그 아래 나오는 어떤 권리에 대해서도 차별과 배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권리 조항을 다루기에 앞서 일반조항 내지는 원칙을 제시하는 것은 UN 및 국제 인권기구들 등에서 작성된 동시대의 국제인권문헌이 취하는 방식이기도 함을 알려드립니다.

1) 우리는 4.16 인권선언에서 어떤 원칙을 세우고 강조해야 할까요? 선언에 들어갈 권리항목을 관통하는 기본적인 원칙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2) 성안팀에서는 ‘인간 존엄성 존중의 원칙’, ‘평등의 원칙’, ‘연대의 원칙’, ‘피해자 존중의 원칙’ 등 네 개의 원칙을 꼽아봤습니다. 이 네 가지 원칙이 구체적 권리항목을 구성하는데 적합한 원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성안팀에서는 각 원칙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의미 설명이 충분한 것인지, 보완되어야 할 것은 있는지 함께 토론해 보았으면 합니다.

(예시)

인간 존엄성 존중의 원칙

인간의 존엄성은 인권의 기초중의 기초이다. 존엄성을 계산해서도 안 되고 타협과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서도 안 된다. 정부는 모든 정책과 실천에서 인간 존엄성을 존중해야 한다. 특히 재난 상황에서 최우선은 생명을 구조하는 것이어야 하고, 재난의 예방·구제·사후조치의 모든 단계에서 누구나 존엄성을 존중받아야 한다.

평등의 원칙

인간 존엄성에 위계와 등급을 매기는 차별은 존엄성 훼손의 원인이자 결과이다. 다른 누군가에 비해 가치가 덜하거나 더한 존엄성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평등한

사회가 안전하고 불평등한 사회는 위험하다. 근원적인 평등이야말로 안전을 위한 길이다. 어떤 국적·신분·지위·나이·성별 등을 가진 사람이건 재난의 예방·구제·사후 조치의 모든 단계에서 평등하게 존중받아야 한다.

연대의 원칙

인간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고 살아간다. 강자에 의한 약자에 대한 구조적 억압을 제거하려는 실천이 연대이다. 연대를 통해 시민들은 공동체적 삶에 참여하며 사회적 관계의 질을 높일 수 있다. 각종 참사는 연대의 고리가 약해졌을 때 발생하며 확대된다. 안전은 연대가 강화될 때 보장된다.

피해자 존중의 원칙

참사의 영향을 받은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인권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피해자는 피해자이기에 앞서 국제인권법과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모든 권리의 보유자이다. 피해자는 자신의 인권에 기초해서 피해자에게 당연히 보장돼야 할 권리를 가진다. 피해자의 권리 중 핵심은 진실규명, 가해자 처벌을 포함한 정의실현, 배상, 재발방지와 제도개혁에 대한 권리이다. 이 권리들은 포괄적이고 상호 연관된 조치를 필수로 한다. 피해자는 필수적인 조치들 간에 거래나 선택을 강요받아선 안 된다.

4. 용어 정의에 관하여

지난 4월 14일 원탁회의에 제출된 4.16인권선언 발의문에는 용어정의를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인권침해, 참사, 피해자에 대한 정의를 명시함으로써 우리의 선언이 이 용어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드러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는 세월호 참사와 그 이전의 각종 참사들이 인권침해로 이해되지 않았으며 이후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배상과 보상의 과정 등에서 피해자의 목소리가 무시되고 오히려 피해자가 비난을 당하였으며 올바른 사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활동 과정에서 인권이 보장되지 않았던 경험을 반영합니다. 성안팀에서는 인권침해, 참사, 피해자에 대하여 유엔의 '재난경감국제전략' 등의 문서를 참조해서 용어정의를 해봤습니다.

1) 용어 정의가 필요한 개념이 이것 말고 또 있을까요?

2) 인권침해, 참사, 피해자에 대한 정의에서 무엇을 보완하거나 고쳐야 할까요?

(예시)

인권침해

일반적으로 인권침해는 국제인권규범과 대한민국 헌법으로 보장된 인권을 개인적 및 집단적 차원에서 침해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실현할 국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침해의 심각성은 침해된 권리의 성격, 침해의 규모, 피해자의 취약성, 침해가 끼친 영향으로 판단된다. 특히 생명권과 그에 따른 국가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와 관련하여 재난 위험을 방치하거나 그 영향을 줄이지 못한 정부는 인권침해의 책임이 있다. 정부의 행위 또는 태만으로 인한 재난 피해는 명백한 인권 문제이다. 모든 위험이 그 자체로 재난이 되는 것은 아니다. 누가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고 훨씬 취약하며, 사고 시 어떤 복원력을 갖췄느냐에 따라 단순 사고 또는 자연 재해가 인간이 만든 참사가 될 수 있다. 위험에 대한 노출과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합리적인 예방 행위를 취하지 않고, 복원력을 강화하지 않고, 효과적인 고통의 완화 조치를 취하지 않는 정부의 잘못은 인권 침해이다.

피해자

피해자는 국제 및 국내 인권 규범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행위 또는 태만으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 피해, 감정적 고통, 경제적 손실, 기본적 인권의 실질적인 침해 등을 개인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겪은 사람이다. 피해자에는 직접적인 피해자와 그 가족 뿐 아니라 피해자를 돕거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입하다가 피해를 입은 사람도 포함된다.

참사

참사는 소중한 생명의 상실, 엄청난 인간의 고통과 곤란, 또는 심각한 물질적·환경적 손실을 야기함으로써 사회의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재앙적인 사건 또는 이어진 사건을 의미한다. 참사는 세월호 참사의 경우처럼 사건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강조하는 용어이다.

5. 일반적 권리와 피해자의 권리에 관하여

보통의 권리선언이라면 구체적 권리 조항은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순으로 나열될 겁니다. 그런데 4.16 인권선언은 참사와 관련된 특수한 인권문제를 다루기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특수한 권리는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사람이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 인권으로부터 나옵니다.

성안팀은 우리가 함께 선언해야 할 권리들을 ‘일반적 권리’와 ‘피해자의 권리’로 나누어 제시

했습니다. ‘일반적 권리’는 기본적 인권의 목록을 최대한 압축하되 그 내용을 재난 시와 연결시킬 수 있도록 고민했습니다. ‘피해자의 권리’를 특화한 것은 그간 한국사회에서 술한 인권침해 피해자들이 있었지만, 피해자 인권에 대한 인식의 수준이 너무 낮고 피상적이란 문제의식 때문입니다. ‘보(배)상 받았으면 됐잖아’로 집약되는 인식에 맞서기 위해 유엔의 최신 기준들을 참조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특히 상세하게 다뤘습니다. 성안팀은 유엔의 ‘진실·정의·배상·재발방지 보장에 관한 특별보고관 보고서’, ‘피해자 구제와 배상에 관한 기본원칙’, ‘불처벌투쟁원칙’ 등을 참고하였습니다.

1) 성안팀이 제시한 권리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권리들은 상호불가분의 관계를 가지며 상호의존적이므로 많은 목록이 많은 권리를 드러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선언해야 할 권리의 내용을 제안해주세요.

- (예시)**
- ‘일반적 권리’
- 생명, 생존, 안전에 대한 권리
 - 알 권리 ① (진실의 추구) ② (정보에 대한 접근) ③ (의견과 표현의 자유)
 - 권리를 위해 행동할 권리 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② (결사와 집회의 자유) ③ (프라이버시와 명예)
 -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 ① (사회적 안전에 대한 권리) ② (교육권) ③ (일할 권리와 일터에서의 권리) ④ (휴식과 여가, 문화생활에 대한 권리)
- ‘피해자의 권리’
- 피해에 대한 인정
 - 진실에 대한 권리
 - 정의실현에 대한 권리
 - 배상에 대한 권리 ① (원상회복) ② (금전적 배상) ③ (재활) ④ (만족) ⑤ (재발방지)
 - 재발방지와 제도 개혁에 대한 권리

2) 우리가 선언할 권리의 내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권리조항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토론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볼까 합니다. 성안팀은 ‘생명, 생존, 안전에 대한 권리’라는 이름으로 아래와 같이 설명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제안하는 권리의 내용을 설명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시)

생명, 생존, 안전에 대한 권리

모든 사람은 고유한 생명권을 가진다. 누구나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를 사회 전반의 가치와 제도에 대한 신뢰 속에서 계획하고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결핍과 공포로부터의 자유 및 권리를 위해 행동을 취할 자유가 인간의 안전이다. 생명·생존·안전에 대한 권리는 개인의 역량을 초과하는 경제적·환경적 및 여타의 위험에 대한 제도적·구조적 장치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특히 각종 재난 시에는 그 결과를 완화할 수 있을 긴급 구제에 대한 권리가 있다.

3) 세월호 참사 이후 지속돼온 피해자에 대한 괴롭힘과 억압에 많이 분노하셨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로 특히 강조할 필요가 있는 내용은 무엇인지, 그 내용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지 제안해주세요.

(예시)

피해에 대한 인정

모든 피해자는 자신이 부당한 해를 입었고 고통을 겪는다는 사실에 대한 인정을 획득할 권리를 가진다. 피해자는 특히, 정부와 책임 있는 대표자로부터 피해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를 받을 권리가 있다. 피해자는 참사 처리의 모든 과정에서 의미 있는 참여를 할 권리가 있다. 피해자의 참여는 진실규명, 재판, 배상, 재발방지과 제도개혁의 전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실종자의 가족은 피해자의 행방과 운명을 알 때까지 모든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가 있다. 포괄적인 제반 조치가 착수·완료되기 이전인 상황에서는 긴급하고 절실한 구제와 지원이 모든 피해자에게 당장 제공되어야 한다.

6. 의무와 책임

재난 시 생명과 인권을 보호할 일차적 의무는 당사국 정부에 있습니다. 우리는 명백한 의무 방기와 적극적으로 저지른 악행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묻습니다. 그런데 한국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초국적기업 등 정부가 아닌(그렇지만 정부와 결탁한) 행위자들에 의한 인권침해가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의무를 통해 간접적으로 정부가 아닌 행위자들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도 있지만, 기업 자체에 직접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움직임이 커가고 있습니다. 그리

고 정부나 기업 등 권력집단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려면 시민들의 정치적 책임이 작동해야 합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성안팀은 의무와 책임의 주체를 구체적으로 '지목'하자는 방안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의무, 공무원의 의무, 기업의 의무, 언론의 의무를 항목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들이 져야 할 의무, 그에 따른 죄과에 대한 처벌과 책임 묻기는 시민이 져야 할 책임(연대할 책임, 집단적 기억을 만들고 전파시킬 책임, 권력에 대한 감시와 혁신 등)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교육의 책임, 시민사회의 정치적 책임, 노동자의 정치적 책임, 시민의 정치적 책임으로 다뤘습니다. '노동자'를 특별히 언급한 것은 기업의 의무에 대응하여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등을 제시하기 위해서입니다.

1) 국가, 공무원, 기업의 책임과 시민의 책임은 어떻게 구별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즉 참사에 있어서 국가, 공무원, 기업에 책임을 묻는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책임을 어떻게 물어야 할까요? 또한 참사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서 시민에게 요구되는 책임이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2) 성안팀은 정부의 의무, 공무원의 의무, 기업의 의무, 언론의 의무, 교육의 책임, 시민사회의 정치적 책임, 노동자의 정치적 책임, 시민의 정치적 책임을 다뤘습니다. 이 외에도 또 다른 책임과 의무의 주체가 있을까요?

3) 각각의 의무와 책임의 내용으로 어떤 것을 선언하면 좋을까요?

(예시)

정부의 의무

정부는 대한민국이 당사국인 국제인권법과 헌법에 따라 그 관할권내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할 의무를 진다. 특히 정부는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 시에는 그 위해를 줄일 수 있는 전략을 택하고 이행할 우선적 책임을 진다. 정부는 그 관할권내 모든 행위자들에 대해 인권존중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도록 할 책임이 있다.

기업의 의무

기업은 인권을 존중하는 분명한 정책을 채택하고 사회적으로 약속해야 한다. 기업은 자사의 활동·상품 또는 서비스로 인한 직접적 또는 잠재적 인권 침해와 위협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를 예방·조사·처벌·배상하도록 하는 효과적인 규제 정책과 입법이 있어야 한다.

노동자의 정치적 책임

노동자를 비롯해 자신의 노동과 서비스로 사회에 기여하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일에서 존엄성을 지켜야 한다. 이 존엄성은 자기의 인격과 안전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것이기도 하다. 인간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에 대해서는 작업중지와 개선을 요구해야 하며 노동자의 이런 권리는 제도와 정책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시민의 정치적 책임

모든 시민은 이 사회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자신이 연루되어 있고 연대에 기초하여 책임을 공유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특히 참사 피해자와 관련하여 모든 시민은 그 피해 배상에 관한 책임을 공유하며 참사에 대한 집단적 기억을 만들고 전파하고 유지할 책임이 있다. 모든 시민은 참사를 야기한 정치와 경제의 구조를 혁신하고 인권을 옹호하는 구조를 만들 책임이 있다.

키워드: 존엄

다시, 존엄함에 대하여

우리는 모두 존엄합니다.

“모든 인간은 존엄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세계인권선언 제 1조의 내용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이야말로 인권의 기본 조건임을 천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세계인권선언 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의 법이 인간의 존엄이란 그 무엇에도 선행하는 ‘기본권’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우리 헌법질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유로운 인격 발현의 보장을 최고 가치 중의 하나로 삼고 있다”는 입장을 견지합니다. 국가와 그에 준하는 정치 체제의 존재 이유는 무엇보다 구성원인 국민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는 것, 그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것인 셈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매일 매일 인간의 존엄이 국가에 의해서 침해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지만 말입니다.

존엄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인간이 존엄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어쩌서 인간이 존엄하다는 주장, 즉 ‘인간의 존엄성’은 그 무엇에도 선행하는 주된 권리일 수밖에 없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존엄성을 통해서 무엇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존엄성’이란 무엇보다 우리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재 의미가 있으며, 그 생명의 가치를 존중받고 인격적으로 대우받을 권리를 타고났음을 주장하는 말입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존엄이 항상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인정되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특정한 지위에 있는 자만이 존엄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모두가 존엄하다는 생각은 인간 사유의 점진적인 진보와 오랜 투쟁의 역사 속에서 등장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쟁취한 존엄함이란 단순히 높은 지위나 우아한 태도로부터 얻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풍족하고 화려한 생활을 한다고 해서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인간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선택한 삶의 격을 갖추고 누릴 수 있음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격은 나 홀로 단절적으로 갖추어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존엄을 함께 고려하는 공존의 기술 안에서 비로소 갖추어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인간의 존엄성이란, 우리가 존엄하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내가 존엄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하는 특별한 조건이나 자격 같은 것은 없습니다. 권위적인 사회,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는 사회에서는 존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가치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쉽게 구별되는 것처럼 이야기됩니다. 한국 사회 역시 마찬가지

이지요. 그러나 사회의 통념과 다르게 존엄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재산이 많은 적든, 어떤 직종에 종사 하든 혹은 전혀 일을 하지 않든, 어떤 성별이나 신체적 조건을 가졌든, 교육 수준이 어떻든, 어떤 병을 앓았고 과거에 어떤 잘못을 저질렀건 간에, 그리고 또 어떤 사랑을 하는지와 무관하게, 우리는 그 자체로 존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존엄이란 단 한 명의 구성원도 놓치지 않는 매우 촘촘한 그물망입니다. 그리고 이야말로 우리가 존엄을 통해서 주장해야 할 바입니다.

또 한편으로 인간의 존엄성은 우리가 누군가의 혹은 무엇인가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 세계의 목적이어야 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가치는 숫자나 돈으로 계산될 수 없으며, 그렇게 팔리거나 소비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스펙을 따지고 스스로를 상품으로 생각하게 된 것은 자본이 인간의 존엄을 침해해 온 역사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황스러운 것은 그 과정 속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했어야 하는 국가가 자본과 동맹을 맺고 이를 지지해 왔다는 점이지요. 우리의 존재와 생명이 계산되는 순간, 우리의 존엄은 훼손당합니다. 인간이 아니라 물건이 되어 버리기 때문이며,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은 우리가 자율적으로 선택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가와 자본은 우리를 숫자로 만듦으로써 손쉽게 관리하고 지배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자율성을 무시하고, 삶의 격을 끌어내립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1년 간의 기록은 국가와 자본이 어떻게 인간을 물건으로 취급하면서 그 존엄함을 짓밟아 왔는지에 대한 상세한 묘사였습니다.

우리의 존엄성을 다시 선언하고 그것을 되찾기 위해 일어서는 것은 우리를 수단으로 전락시키려는 국가와 자본의 폭력에 더 이상 굴복하지 않고 어렵게 쟁취한 '존엄의 평등성'을 끝까지 지켜내겠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동시에 그에 무기력하게 동조하는 동시대인들에게 각성을 촉구하는 과정이기도 하겠지요. 국가와 자본은 계속해서 경제 침체라던지 국민의 결속 와해, 종북이라는 이데올로기 등을 읊조리면서 “그만하라” 혹은 “가만히 있으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며 움직이게 하는 규범이나 법칙, 혹은 논리 중에서 그 어떤 것도 인간의 존엄 그 자체를 넘어서서 그것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존엄이야말로 모든 것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국가와 자본 역시 우리의 존엄성을 그 작동 원리와 실천의 기본으로 삼아야 합니다. 인간의 존엄성이란 설득하고 정당화시킬 대상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전제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국가와 우리의 존엄

다시 한 번 강조하자면, 인간의 존엄성은 어떤 고매한 도덕적 당위이기 이전에, 우리의 실존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입니다. 『삶의 격』이라는 책에서 인간의 존엄을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는 페터 비에리는 인간이 '존엄성'이라고 하는 삶의 형태를 만들어낸 것은 인간의 삶 자체가 연약하고 무너지기 쉬운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존엄을 지키는 삶'의 형태가 그런 위험을 견제해 준다는 것입니다. 비에리는 “존엄성 있는 삶은 그냥 이렇게 또는 저렇게 살아라, 하는 지침이 아니라 위험을 겪은 실존적 경험에 주어지는 실존적 대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상존하는 위험과 계속되는 재난, 그리고 그것을 막아내고 국민의 생명을 지켜줄 능력을 상실한 사회의 파국 속에서 존엄이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다시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국가와 자본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인간됨과 생명으로서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실천해야 할 현실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해야 합니다.

글의 시작에서 언급했던 법적으로 규정된 인간의 존엄성이란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 자기결정권에 바탕을 둔 권리입니다. 더불어서 국가는 구성원의 생존을 배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빈곤과 사회적 차별로부터 벗어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국민은 단순한 보호 대상에서 벗어나 주권자로서 국가 권력의 주체로 등장해야 합니다. 이는 수어 년에 한 번씩 나를 대의할 대표자를 뽑는 것으로 국민의 주권자이자 정치적 주체로서의 역할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국민은 국가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하며, 주권자로서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인간 존엄과 자신의 존재 의의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정치적 주체이자 내 삶의 주체로서 스스로 존엄해지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의사결정을 독점하고 국민을 배제하거나 탄압하는 것은 명백하게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세월호 침몰 후 국가는 의도적으로 정보를 숨기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법을 지속적으로 훼손하며, 목소리를 내려는 시도들을 계속 무산시켜 왔습니다. 이는 명백하게 우리의 존엄을 침해하는 일입니다.

과정으로서의 존엄, 그것을 지키는 민주주의

인간이 존엄하다는 생각은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며 쉽게 유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생각이 세계사에 등장할 수 있었던 것, 우리가 비로소 인간의 침범당할 수 없는 가치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게 된 것은 수 천년 동안 계속되어 온 인간의 투쟁과 사유의 진보 속에서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존엄이라는 가치가 세계사에 등장한 이후로도 그것은 지속적으로 침해당하고 흔들리고 훼손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존엄이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아닌 썸입니다. 존엄은 지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존엄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가는 과정 그 자체일 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지속해야 할 싸움이 남아 있습니다. 시시때때로 우리 사회는 존엄을 잃은 야만의 시간으로 되돌아 갑니다. 그렇게 역사의 시계를 뒤로 돌리지 않기 위해서는 태업을 지치지 않고 감아나가는 역동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 힘입니다. 세계를 지배하는 권위와 권력에 대항하여 우리의 존엄을 지키는 과정, 그 자체가 무엇보다 민주주의라고 할 것입니다.

키워드: 안전 [safety, 安全]

표준 국어대사전에서 '안전'이란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음, 또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위키피디아에서 안전은 보다 더 포괄적으로 "재산, 사람, 주거, 공동체, 국가나 조직이 위해로부터 보호되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보호 대상에 따라 안전은 무려 30가지 의미로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넓은 의미로서 안전은 국가가 외부로부터 공격·침략에 대비하여 자국의 안전을 유지·확보하는 일을 뜻하는 '국가안전보장'과 국가가 국민의 생존권을 지킬 것을 목적으로 사회 보험, 생활 보호, 공중위생 등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이 있습니다. 좁은 의미로서 안전은, 특정 장소나 컴퓨터가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정당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는 활동으로서 '보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 「헌법」에서 '안전'이 거론되는 경우로는 우선 '국가안전보장'을 들 수 있습니다. 국가안전보장은 국군의 의무(제5조제2항)이고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설치하는 근거(제91조)가 되는 한편,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제37조제2항전단), 국회 회의공개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제50조제1항), 대통령이 긴급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는 사유(제76조제1항), 재판공개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제109조)로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안전보장이 언제나 예외적 사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 전문에서 표방된 국가란,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기 위한 존재입니다. 국가안전보장 역시 이러한 국가의 존속을 전제로 한 제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특히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법률로써만 제한할 수 있고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제37조제2항후단). 또한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제34조제2항). 이것이 헌법에서 국가가 국민에게 보장해야 하는 두 번째 '안전'입니다.

국제인권규범에서는 보다 더 다양한 의미로 '안전에 대한 권리'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우선 「세계인권선언」에서 "모든 사람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 (제3조)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협약)」에 따르면 모든 사람이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는 것은, 누구든지 자의적으로 체포되거나 또는 억류되지 않고, 어느 누구도 법률로 정한 이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않고는 그 자유를 박탈당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자유권협약 제9조제1항). 다음으로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제22조). 이는 식량, 의복, 주택, 의료, 필수적인 사회역무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실업, 질병, 장애, 배우자와의 사별, 노령, 그 밖의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생계 결핍의 경우 사회보장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의미입니다(제25조제1항). 국가는 이러한 사회보장의 실현을 위해 가용 자원이 허용하는 최대한도까지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더불어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협약)」에 따르면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조건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사회권협약 제7조).

다른 한편으로 이동의 자유 및 거주 자유, 외국인의 권리, 재판의 공개,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 평화적인 집회의 권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하여 활동할 권리를 비롯하여 다른 사람과의 결사의 자유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제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국가안전보장과 사회보장의 권리 간에 계속 긴장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헌법을 비롯하여 국제인권규범에서 국가안전보장을 인정하는 까닭은 국가가 본래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존재 이유로 하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당위가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하여 때로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일단 현대사회가 매우 복잡해지면서 불확실성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울리히 벡이라는 학자는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인간 호르몬 체계의 변동 등 '위험사회'가 과학 기술과 이에 기반한 군사·경제력에서 초래되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지그문트 바우만이라는 학자는 심지어 오늘날 국가가 사회 보장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급속한 세계화와 갈수록 강해지는 해외 시장의 영향력 앞에서 국가의 통제력을 벗어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 활동의 자유를 위해 국가가 기업으로부터 징수하는 세수를 줄이면 이를 재원으로 하는 사회 보장은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 보장이 공공의 역할로부터 개인의 책임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안전도 각자 구매해야 하는 시장 상품으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공공 건강보험보다 민간 의료보험에 의존하는 일이 늘어나는 현상이 대표적이지요. 이제, 위험한 사회에서 과거보다 더 각자도생(各自圖生)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사회 보장을 하지 않는 국가는 국민들의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불황 속에 자신의 삶을 안정적으로 영위하기가 더욱 어려워진 국민은 국가의 의미를 묻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유일하게 남은 '안전', 즉 '국가안전보장'을 유력한 존재이유로 들고 나섭니다. 무시무시한 범죄의 증가, 테러의 위협을 강조하며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응한다는 이유로 국가는 점점 더 경찰력을 늘리고 형사처벌을 강화하며, 정보기관의 비밀활동 또한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 국가안전보장을 이유로 내세우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특히 사회 부조리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탄압하는 데 이 논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도입된 국가 DNA 데이터베이스가 용산 철거민, 쌍용 노동자, 밀양 농민, 장애인 활동가처럼 불복종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삼는 현실을 보십시오. 불평등한 사회에서 가난하거나 소수에 속한 사람들일수록 처벌받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노동 현장은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으로부터 멀어지고 기업에 대한 노동자의 발언권은 억압받고 있습니다.

국가가 자신의 체제 유지를 위한 '국가안전보장'만을 내세울 때 역설적이게도 국민의 안전에 대한 권리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생명보다 이윤을 생각하는 사회 구조가 세월호 참사를 낳았습니다. 그 바다에 국가는 없었습니다. 메르스처럼, 때로 위험은 불시에 찾아옵니다. 그러나 국가가 대형 민영병원의 이해를 위하여 국민의 안전을 소홀히 할 때 그 위험이 더욱 확산될 수 밖에 없습니다. 시민과 노동자가 국가의 제한에 맞서 안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

야 합니다. 모든 국민의 존엄을 보장하는 진정한 국가의 역할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존엄'과 '안전'이 함께 보장되는 길입니다.

키워드: 인권

인권의 사전적 정의가 아니라 역사적 맥락이 중요합니다.

“세월호 참사는 인권의 문제일까?” 이 질문은 생각보다 어려운 물음을 던집니다. 인권을 인간을 최고의 목적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인간사회의 기본가치라고 정의한다면, 세월호 사건이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을 듯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전식의 뜻풀이 방식으로 인권을 이해하는 것이 과연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여 책임자를 문책하고,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와 문화를 바꾸는 일에 효과적일까요? 사실 우리의 일상에서 사전에 나와 있는 개념 정의가 큰 도움이 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인권에 대한 사전적 정의 역시 세월호 참사가 보여주는 한국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풀어가는데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을 듯 합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것은, 인권에 대한 엄밀한 개념 정의가 아니라 인권이라는 가치의 역사적 맥락인 것은 아닐까요? 다시 말해서 인권이 어떤 사회적, 정치적 맥락 안에서 출현하였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의 의미를 갖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오히려 더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요?

인간의 가치와 인권의 자격을 따지던 시대는 길었습니다.

인권이라는 개념은 생각보다 그렇게 오랜 역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인권이란 말은 누구든지, 어떤 경우에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우받아야 하며, 각 개인들은 출생과 더불어 누구나 평등하게 각자의 존엄성을 존중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생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사람들 사이에서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대략 250년 전 쯤의 일입니다. 사람들 사이에는 엄격한 위계가 있으며, 모든 사람이 단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서로 평등하고 자유롭다는 생각, 그 자연스러워 보이는 생각이 허황된 관념이라고 치부된 시절이 훨씬 더 길었던 셈이지요. 매우 오랜 세월 동안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부모가 누구인가, 혹은 성별이 무엇인가 등에 따라서 고귀한 자와 비천한 자의 구별이 뚜렷했었습니다. 그래서 존귀한 자는 더 많은 권리를 가지는 것이 당연하며, 그렇지 못한 자의 권리는 제한되어야 했지요. 역사 이래 국가가 출현한 모든 지역에서 사람들은 신분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정도가 달랐습니다. 귀족과 평민, 그리고 천민 혹은 노예는 결코 동등한 권리를 가진 ‘같은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천민이나 노예들은 걸어 다니는 재산이나 말하는 짐승에 불과한 존재들이었으며, 그들의 생명과 안전은 오로지 강자들의 필요와 호의에 의해서만 보장되는 것이었지요. 이렇게 인간의 권리를 특정한 혈통, 종교, 성별 등의 자격기준에 따라 불평등하게 분배하는 체제는 오래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대략 6천 500년 전 인류 최초의 국가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시작된 이래, 불평등한 권리체제는 세계의 무수한 국가들 속에서 6천 200년 가량을 이어온 것입니다.

인권의 역사는 투쟁의 역사입니다.

이러한 불평등한 권리체제는 18세기에 들어서야 비로소 그 끝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1789년 발발하여 1875년 제3공화국이 수립되는 시기까지 이어진 프랑스 대혁명은 불평등한 권리체제를 종식하고 새로운 권리체제를 수립하려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새로운 권리체제의 원리가 바로 인권이었지요. 즉, 이 위대한 혁명은 모든 인간의 존엄과 권리는 동등하며 결코 침해해서는 안 되는 원칙에 기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프랑스 대혁명은 무엇보다 ‘인권혁명’이었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는 단순한 생각을 사회제도의 원리이자 국가 운영의 기본원칙으로 만들어낸 혁명이었다는 말입니다. 인간 존엄의 동등성과 그 권리의 평등성을 부정하는 토대 위에 세워진 권리체제를 무너뜨리고, 모든 인간의 평등과 존엄을 새로운 권리체제의 토대로 삼은 혁명이 바로 프랑스 대혁명입니다.

프랑스 대혁명 이후 많은 국가들은 인권을 국가의 핵심 목적 가운데 하나로 삼았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인권이 완전히 보장되는 제도와 질서가 성립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권리를 제한당하거나 빼앗긴 사람들은 인권의 이념을 내세우며 자신들의 존엄성이 국가와 사회로부터 보장받아야 함을 주장하며 싸웠고, 또 그렇게 권리를 쟁취해 갈 수 있었습니다. 인권은 더 많은 권리를 가진 자들이 권리가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준 선물이 아니라, 권리 없는 자들이 힘을 합쳐 싸움으로써 스스로 쟁취한 투쟁의 산물인 것입니다.

인권의 역사, 인권이 진전되고 확장되어온 역사는 이처럼 투쟁의 역사였으며, 이는 이 땅이라고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민주공화국을 표방하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도 한국에서 인권은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생각과 말의 자유는 박탈 당하고, 집회와 시위, 결사의 권리는 제한되었으며, 여성은 차별받고, 노동자들은 극심하게 착취당하였지요. 독재정권에 저항하는 이들은 경찰과 군대에 의해 얻어맞고 잡혀가고 고문당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인권은 이러한 독재정권의 횡포에 저항하는 이들의 투쟁을 위한 언어였고, 독재정권의 지배를 물리치고 새롭게 만들어낼 사회의 구성원리였습니다. 그러한 지난한 투쟁의 시간을 거치면서 인권의 가치는 조금씩 조금씩 실현되기 시작했습니다. 시민의 권리, 여성의 권리, 노동자의 권리, 장애인 권리, 성소수자의 권리, 이주민의 권리가 그와 같은 싸움을 통해서 진전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권은 도덕적 법칙을 그저 현실에 적용한 결과 등장하고 구현된 가치가 아닙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으므로, 다시 한 번 말하겠습니다. 인권은 모든 인간의 권리가 동등할 수 없으며 오로지 소수의 인간만이 존엄하다고 주장하는 자들에 맞서 권리 없는 자들이 자신의 존엄성과 평등함을 피 흘려 증명한 결과 쟁취하게 된 가치입니다. 인권의 역사는 투쟁의 역사였으며, 그러한 투쟁의 역사 없이는 인권도 있을 수 없었습니다.

타인의 권리가 실현되는 조건이 나의 권리가 실현되는 조건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인권을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이해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존엄하며 또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믿음을 일상과 사회 제도 속에서 실천하는 행동 없이는 인권이란 다만 공허하고 박제된 개념으로 남을 뿐입니다.

인권은 땅이나 물건처럼 개인에게 소유권이 주어지는 개별화된 인간의 권리가 아닙니다. 인권은 권리의 평등과 존엄성의 동등을 믿는 사람들이 서로 힘을 합쳐 쟁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

다. 이렇게 인권의 실현을 위해 힘을 모은 사람들은 무엇보다 서로가 서로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평등한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제한하면서 자신의 권리를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표현하자면, 타인의 권리가 보장될 때 나의 권리 역시 보장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과정이자 움직임으로서의 '인권'의 가치는 이렇게 서로가 서로의 존엄성과 권리를 인정하고 보장하는 관계 속에서 싹트기 시작하며,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인권은 개인이 온전히 자신의 힘만으로 실현하고 보장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자신의 힘에만 의지하여 홀로 살아가려는 이들에게 인권은 필요 없습니다. 인권은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권리입니다. 그것은 서로가 서로의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지는 관계 속에서만 구현될 수 있는 권리인 것입니다.

인권의 역사는 우리가 나 자신의 존엄성을 존중받고 보장받기 위해서라도 타인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장해야 한다는, 상호 책임의 관계를 맺어야 함을 알려줍니다. 타인의 존엄한 삶이 나의 존엄한 삶의 보장 조건임을 인권의 역사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타인의 존엄성이 침해되고 훼손될 위협이 있을 경우 그러한 침해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함께 행동하고, 이미 그것이 침해되고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그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여러 활동들에 참여할 책임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권은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의 권리인 것입니다.

키워드: 선언(宣言, 영: Declaration, Manifesto, 프: déclaration, manifeste, 독: Deklaration, Erklärung, Manifest)

표준국어대사전에 나오는 '선언'의 한자어 그대로의 뜻은 '널리 퍼서 말함'입니다. '국가나 집단이 자기의 방침, 의견, 주장 따위를 외부에 정식으로 표명함'이 '선언'이라는 말을 쓸 때 보통 뜻하고자 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선언의 주체는 대부분 '국가'입니다. 지금은 국제관계가 국가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초국적 기업, 비정기구 등 다양한 주체들의 국제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형성되지만, 19세기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국제관계의 주체는 '국가'였습니다. 국가가 상대국가에게 전쟁을 선포하거나, 상대방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중립의 뜻을 표시할 때, 또는 전쟁 중인 국가들이 잠시 휴전하거나 전쟁을 끝내고자 할 때, 바로 국가는 상대국가에게 혹은 주변국들에게 '선언'을 합니다(개전선언, 휴전선언, 종전선언, 중립선언 등). 또한 새로운 국가가 수립될 때, 그 국가의 최고 수반은 전 세계에 '국가'수립을 선포합니다. 이에 대해 주변국들을 중심으로 신흥 국가를 승인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고민합니다.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경우 '선언'은 국가들 사이의 대화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언의 주체를 국가에만 한정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현재의 대다수 국가들은 국가가 수립되기 이전에 사람들이 모여 국가 수립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위해 천명한 선언들을 토대로 합니다. 선언을 토대로 사람들은 보다 구체적으로 헌법안을 만들고 헌법안을 국민투표로 확정된 후 국가 수립을 완성합니다. 선언은 국가 수립뿐만 아니라 개인의 권리와 의지를 이루기

위해 사용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선언'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언의 뜻은 '널리 퍼서 말하다'입니다. 이 선언과 '말을 퍼뜨리다'라는 뜻의 소문은 언뜻 같은 뜻을 가진 듯하지만 사실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소문은 말하는 주체, 즉 소문을 퍼뜨린 사람이 누군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퍼뜨려진 말의 진실이 무엇인지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소문은 그저 소문일 뿐이지 소문을 근거로 어떤 주장을 피거나 뭔가를 실천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 달리 선언의 주체는 분명합니다. 아니 분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선언이든 선언의 모든 내용은 '내가, 우리가 누구다'라고 공개적으로 널리 퍼뜨려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3.1독립운동의 시작을 알린 '기미독립선언', 영국의 식민지에서 독립을 선포한 '미국독립선언문', 억압적인 절대왕정을 무너뜨리고 시민들의 자유와 평등을 외친 '프랑스인권선언'의 내용은 바로 우리는 일본제국이나 대영제국의 식민지 백성이거나 프랑스 절대왕정의 노예 같은 신민이 아니라 자유롭고 독립된 '조선인', '미국인', '프랑스 시민'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식민지 백성이거나 노예 같은 신민으로 더 이상 취급하지 말고 당신들과 평등하고 자유로운 '조선인', '미국인', '프랑스 시민'으로 인정하면서 공식적으로 예를 갖추라는 당당한 권리 선포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왜 우리는 자유롭고 평등하게 우리의 권리를 누려야 하는지를 분명히 밝히지 않으면 우리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선언의 주체가 누구인지 확실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 주체가 스스로를 누구로 규정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지 않으면 결국 상대방은 우리가 아니라 자신들의 방식대로 맘대로 우리를 대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선언은 선언이 아니라 소문에 불과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누구인지를 정하고, 우리의 권리와 목표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선언입니다. 그런데 선언은 혼자서 혹은 우리끼리 맘속에 품은 숨은 의지가 아닙니다. 선언은 상대를 향해 내 의지를 밝히는 '고백과 결단'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보고 마냥 짝사랑만 하다가 용기를 내서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같이 살기로 결단하고 상대방에게 고백할 때 짝사랑은 연인 사이로 바뀝니다. 선언은 속으로 품은 뜻이 아니라 상대를 향한 나의 고백이자 결단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과 결단은 바로 '새로운 관계'를 이끌어 냅니다. 그렇습니다. 선언은 나 자신의 자유로운 혹은 자유방임적인 독립된 삶의 선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언을 듣는 상대 국가, 이웃, 시민들과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자 하는 출발입니다. 새로운 관계는 새로운 윤리가 필요합니다. 마치 서먹서먹하던 혹은 원수인 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서로 고백과 결단을 통해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면 지금까지 지내온 방식이나 서로를 대한 태도는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 위에 서야 합니다.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라 하기 어렵습니다. 존중하기 위해서는 상대를 존중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내 맘대로 존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각자 살아온 방식과 달리 새로운 가치와 원칙을 창조적으로 만들게 됩니다. 바로 새로운 윤리입니다. 이웃들,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 서로 다른 민족이나 국가들 사이에서 선언이 이뤄지는 것은 곧 새로운 윤리, 새로운 삶의 양식을 시작하는 창조적이고 용기 있는, 나아가 가슴 벅찬 모험이기도 합니다.

넓은 틀을 넘어서 협력과 연대에 기반 한 공존의 새로운 틀을 만드는 시작점인 '선언'은 우리가 반드시 지키도록 요구받는 '법'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법은 지금 우리가 공존하는 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법은 보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를 유지하기 위해 법은 그에 맞는 강력한 처벌규정을 동반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처벌을 시행하기 위해 법원, 검찰, 경찰, 교도소 등과 같은 국가기구를 필요로 합니다. 힘을 동원한 처벌을 정당화하기 위해 시민들의 대표가 법을 정하게 하고 학자들이 여러 정당한 논리를 펴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지금이 어떤 상태이든 지금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선언은 법과 달리 스스로의 주체성, 자주성에 근거하고 힘과 처벌이 아니라 협력과 연대를 통해 서로의 관계를 만들어 가는, 법보다 훨씬 높은 인간의지의 표현입니다.

선언은 법의 힘을 넘어서며, 법이 바라보지 못한 새로운 관계, 새로운 윤리, 새로운 세상의 탄생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선언된 내용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인 처벌이 가해질 수 없습니다. 선언은 나,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언을 지키지 않거나 부정하는 것은 나 스스로를 부정하거나 변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선언을 지키기 위해서는 선언에 동참한 모든 사람들이 법적 강제가 아니라 서로를 위한 믿음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 믿음에 기초한 연대의 힘으로 때로는 선언과 부딪히는 법을 개선하기 위해 피땀을 흘려야 하고, 때로는 낡았지만 오랫동안 우리에게 익숙한 잘못된 습관이나 편견을 바꿔나가는 힘든 길을 함께 걸기도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선언들은 국가와 함께 가기도 하지만, 국가를 넘어 국가 혹은 우리가 사는 공동체를 더 자유롭고 평등한 곳으로 이끌기 위한 나침반이 되기도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걸어 다니는 헌법주체이듯 모든 시민들은 헌법이 보장한 국가의 주권자이며, 주권자이기에 국가에서, 국가를 향해서, 국가를 넘어서 선언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이것이 바로 오랫동안 많은 국가들이 선언의 주체를 모든 시민들이 아니라 국가에 한정시키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숨겨진 이유입니다. 개인이나 시민사회가 어떤 선언을 할 경우, 그 선언은 국가를 넘어서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언은 모든 새로운 관계의 출발을 위해 모두에게 보장되어야 하고 선언의 주체는 그 결과를 책임져야 합니다. 그 때 국가는 진정 시민을 위한 국가가 될 것입니다.

물론 모든 선언이 낱고 차별적인 것을 넘어 아름다운 시작이지는 않습니다. 독립선언이나 인권선언과 달리 전쟁선언은 비극을 초래합니다. 어떤 선언은 상대를 존중하지도 공존을 위한 예의도 잊은 채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쫓아내는 결과로 이어지면서 오히려 평화를 깨뜨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언은 언제나 '공존의 이유'를 담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선언은 비록 지금까지 상대가 연인이나 친구나 이웃이나 가족이 아니라 원수이거나 적이라 할지라도, 상대를 쫓아내거나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와 협력하고 연대할 수 있는 공존의 이유를 담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준비하는 선언이 힘들고 어렵지만 창조적이고 용기 있고 가슴 벅찬 작업이자 여정인 이유입니다.

세계인권선언 (1948)

간략소개: 세계인권선언이 나오게 된 직접적인 배경은 1939년부터 1945년까지 6년 동안 5천만 명에 이르는 인간의 생명을 앗아간 제 2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의 인권이 보장되어야 함을 선언한 최초의 국제적 합의된 보편적인 문서이지요. 선언은 전문과 30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인간은 평등하며, 이 평등은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을 두고 있음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이 오늘날까지 인권에 관한 가장 중요한 문서로 여겨지는 까닭은 이 문서가 인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인권목록이자 이 선언이 만들어진 이후, 보다 실제적이고 정교화된 인권규범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전문

인류 가족 모든 구성원의 고유한 존엄성과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평화의 기초가 됨을 인정하며,

인권에 대한 무지와 경멸은 인류의 양심을 짓밟는 야만적 행위를 결과하였으며, 인류가 언론의 자유, 신념의 자유, 공포와 궁핍으로부터의 자유를 향유하는 세계의 도래가 일반인의 지고한 열망으로 천명 되었으며,

사람들이 폭정과 억압에 대항하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반란에 호소하도록 강요받지 않으려면, 인권이 법에 의한 지배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함이 필수적이며,

국가간의 친선관계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것이 긴급하며,

국제연합의 여러 국민들은 그 헌장에서 기본적 인권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 남녀의 동등한 권 리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였으며, 더욱 폭넓은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수준의 개선을 촉진 할 것을 다짐하였으며,

회원국들은 국제연합과 협력하여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과 준수의 증진을 달 성 할 것을 서약하였으며,

이들 권리와 자유에 대한 공통의 이해가 이러한 서약의 이행을 위하여 가장 중요하므로, 따라서 이제 국제연합 총회는 모든 개인과 사회의 각 기관은 세계인권선언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한 채, 교육과 학업을 통하여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존중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점진적인 국내적 및 국제적 조치를 통하여 회원국 국민 및 회원국 관할하의 영토의 국민들 양자 모두에게 권리와 자유의 보편적이고 효과적인 인정과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힘쓰도록, 모든 국민들과 국가에 대한 공통의 기준으로서 본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한다.

제1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에게 형제의 정신으로 대하여야 한다.

제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없이, 이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나아가 개인이 속한 나라나 영역이 독립국이든 신탁통치지역이든, 비자치지역이든 또는 그 밖의 다른 주권상의 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이든, 그 나라나 영역의 정치적, 사법적, 국제적 지위를 근거로 차별이 행하여져서는 아니된다.

제3조 모든 사람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

제4조 어느 누구도 노예나 예속상태에 놓여지지 아니한다. 모든 형태의 노예제도 및 노예매매는 금지된다.

제5조 어느 누구도 고문이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제6조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7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이 선언을 위반하는 어떠한 차별에 대하여도, 또한 어떠한 차별의 선동에 대하여도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8조 모든 사람은 헌법 또는 법률이 부여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담당 국가법원에 의하여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9조 어느 누구도 자의적인 체포, 구금 또는 추방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자신에 대한 형사상의 혐의를 결정함에 있어서, 독립적이고 편견 없는 법정에서 공정하고도 공개적인 심문을 전적으로 평등하게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1조 1. 형사범죄로 소추당한 모든 사람은 자신의 변호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장치를 갖춘 공개된 재판에서 법률에 따라 유죄로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행위시의 국내법 또는 국제법상으로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유죄로 되지 아니한다. 또한 범죄가 행하여진 때에 적용될 수 있는 형벌보다 무거운 형벌이 부과되지 아니한다.

제12조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인 간섭을 받지 않으며, 자신의 명예와 신용에 대하여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사람은 그러한 간섭과 공격에 대하여 법률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3조 1. 모든 사람은 각국의 영역 내에서 이전과 거주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한 어떤 나라로부터도 출국할 권리가 있으며, 또한 자국으로 돌아올 권리를 가진다.
- 제14조 1.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하여 타국에서 피난처를 구하고 비호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2. 이 권리는 비정치적인 범죄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만으로 인하여 제기된 소추의 경우에는 활용될 수 없다.
- 제15조 1. 모든 사람은 국적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국적을 박탈당하거나 그의 국적을 바꿀 권리를 부인당하지 아니한다.
- 제16조 1. 성년에 이른 남녀는 인종, 국적 또는 종교에 따른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고 혼인하여 가정을 이룰 권리를 가진다. 이들은 혼인 기간 중 및 그 해소시 혼인에 관하여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2. 결혼은 양당사자의 자유롭고도 완전한 합의에 의하여만 성립된다.
3.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며 기초적인 구성 단위이며,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17조 1. 모든 사람은 단독으로는 물론 타인과 공동으로 자신의 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자신의 재산을 자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 제18조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자신의 종교 또는 신념을 바꿀 자유와 선교, 행사, 예배, 의식에 있어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 제19조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간섭받지 않고 의견을 가질 자유와 모든 매체를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고,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 제20조 1. 모든 사람은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어떤 결사에 소속될 것을 강요받지 아니한다.
- 제21조 1. 모든 사람은 직접 또는 자유롭게 선출된 대표를 통하여 자국의 통치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자국의 공무에 취임할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3. 국민의 의사는 정부의 권위의 기초가 된다. 이 의사는 보통 및 평등 선거권에 의거하며, 또한 비밀 투표 또는 이와 동등한 자유로운 투표 절차에 따라 실시되는 정기적이고 진정한 선거를 통하여 표현된다.
- 제22조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권리를 가지며, 국가적 노력과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 그리고 각국의 조직과 자원에 따라 자신의 존엄성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하여 불가결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실현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 제23조 1. 모든 사람은 근로의 권리, 자유로운 직업 선택권,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에 관한 권리 및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동등한 노동에 대하여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3. 모든 근로자는 자신과 가족에게 인간적 존엄에 합당한 생활을 보장하여 주며, 필요할 경우 다른 사회적 보호의 수단에 의하여 보완되는, 정당하고 유리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4.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
- 제24조 모든 사람은 근로시간의 합리적 제한과 정기적인 유급휴일을 포함한 휴식과 여가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 제25조 1. 모든 사람은 식량, 의복, 주택, 의료, 필수적인 사회역무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실업, 질병, 불구, 배우자와의 사별, 노령, 그 밖의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다른 생계 결핍의 경우 사회보장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2. 모자는 특별한 보살핌과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어린이는 부모의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동등한 사회적 보호를 향유한다.

제26조 1.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은 최소한 초등기초단계에서는 무상이어야 한다. 초등 교육은 의무적이어야 한다. 기술교육과 직업교육은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고등교육도 능력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개방되어야 한다.

2. 교육은 인격의 완전한 발전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를 목표로 하여야 한다. 교육은 모든 국가들과 인종적 또는 종교적 집단간에 있어서 이해, 관용 및 친선을 증진시키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연합의 활동을 촉진시켜야 한다.

3. 부모는 자녀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종류를 선택함에 있어서 우선권을 가진다.

제27조 1.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자신이 창조한 모든 과학적, 문학적, 예술적 창작물에서 생기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8조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제시된 권리와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는 사회적 및 국제적 질서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제29조 1. 모든 사람은 그 안에서만 자신의 인격을 자유롭게 완전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공동체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2.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서, 타인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적절한 인정과 존중을 보장하고, 민주사회에서의 도덕심, 공공질서, 일반의 복지를 위하여 정당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에서만 법률에 규정된 제한을 받는다.

3. 이러한 권리와 자유는 어떤 경우에도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여 행사될 수 없다.

제30조 이 선언의 그 어떠한 조항도 특정 국가, 집단 또는 개인이 이 선언에 규정된 어떠한 권리와 자유를 파괴할 목적의 활동에 종사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행위를 행할 어떠한 권리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사파티스타 민족해방군 선언 (1993)

간략소개: 사파티스타 민족해방군은 멕시코의 가장 가난한 원주민 거주지역인 치아파스주를 기반한 무장혁명 단체로 실상 "우리의 말이 우리의 무기"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무력사용은 최대한 억제했다고 합니다.

미국 주도 아래 캐나다, 멕시코가 속한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 발효된 다음날, 반정부 반세계화 무장봉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발표된 이 선언에서 사파티스타 민족해방군은 멕시코 독재정권에 맞선 투쟁을 선포하며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상기시키고 정치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민주적인 정부 수립을 위해 투쟁을 함께 해 줄 것을 대중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500년에 걸친 투쟁의 산물입니다. 처음에 우리는 노예제에 반대해 싸웠습니다. 독립전쟁 때는 에스파냐에 대해 싸웠고, 다음에는 북아메리카 제국주의에 흡수되지 않으려고 싸웠으며, 그 다음에는 우리 헌법을 선포하고 우리 땅에서 프랑스 제국을 쫓아내기 위해 싸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개혁법의 정당한 적용을 거부하는 포르피리오 디아스의 독재 정권에 맞서 싸웠으며, 여기서 우리는 우리처럼 가난한 사람인 비야와 사파타 같은 지도자를 탄생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를 총알받이로 사용해 우리나라의 부를 약탈해 가려는 세력에 의해 가장 기초적인 것조차 거부당했습니다. 저들은 우리가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겐 교육은 물론 우리 머리를 덮을 만한 반듯한 지붕도, 갈아먹을 땅도, 일자리도, 의료 시설도, 식량도 없을 뿐더러, 우리의 정치 대표자를 자유롭게 민주적으로 선출할 수 있는 권리도 없고, 외국인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도 없고, 우리 자신과 우리 아이들을 위한 평화와 정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말합니다. "이제 그만!(jya basta!)"이라고.

우리는 진정으로 이 나라를 건설한 우리 조상들의 후예이며, 자기 땅에서 쫓겨난 수백만 명의 가진 것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형제자매들에게 우리의 투쟁에 합류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 투쟁은, 언제라도 이 나라를 팔아먹을 준비가 되어 있는 가장 보수적인 집단, 이 집단을 대표하는 반역자 일당이 이끌어 온 저 70년 장기 독재 정권의 탐욕스런 야심으로 우리가 굶어죽지 않을 유일한 길입니다. 저들이 누구입니까. 저들이 바로 이달고와 모렐로스에게 반대했던 사람들이고, 비센테 게레로를 배반했던 사람들이며, 외국 침략자들에게 우리나라를 절반이나 팔아먹은 사람들이고, 유럽에서 군주를 수입해 와 우리나라를 다스리게 한 사람들입니다. 저들이 바로 '과학적인' 포르피리스타 독재 정권을 세운 사람들이고, 석유 수용권에 반대한 사람들이며, 1958년에는 철도 노동자를, 1968년에는 학생들을 대량 학살한 사람들이고, 오

늘날에는 우리에게서 모든 것을, 그야말로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일이 지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리고 마그나 카르타에 기초한 모든 법적인 수단을 강구한 끝에 마지막 남은 희망인 헌법에 기대어, 우리는 헌법 제39조에 호소합니다.

“이 나라의 주권은 본질적으로 그리고 원천적으로 국민에게 있다. 모든 정치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며, 국민의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 국민은 언제나 자신의 정부 형태를 바꾸거나 수정할 수 있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헌법에 따라, 고통의 원천인 멕시코 독재 정권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이며, 일당 체제가 독점하고 있고, 오늘날 권력을 잡고 있는 비합법적인 연방 정부 수반 카를로스 살리나스 데 코르타리가 이끌고 있는 멕시코 연방군에게 전쟁을 선포합니다.

이 선전포고에 따라, 우리는 사회 모든 세력이 독재자를 무너뜨려 이 나라에 합법성과 안정을 회복하려는 우리의 투쟁을 지지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는 또 여러 국제기관과 국제적십자에 우리가 해방 투쟁노력을 하는 동안 민간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우리의 전투를 감시하고 단속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지금은 물론 앞으로도 항상, EZLN을 해방 투쟁을 위한 교전 세력으로 규정하는 제네바 협약을 준수할 것을 선언합니다. 멕시코 국민은 우리 편이며, 우리에게는 국민과 반란군 전사들이 사랑하고 존중하는 삼색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군복은 파업에 나선 노동자를 상징하는 검은색과 붉은 색으로 되어 있으며, 우리는 항상 사파티스타 민족해방군을 뜻하는 ‘EZLN’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깃발을 들고 전투에 나설 것입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마약 밀매단이나 마약 게릴라, 도둑, 또는 우리의 적이 사용할지도 모를 기타 이름으로 우리를 매도함으로써 우리의 정당한 주장에 먹칠을 하려는 어떤 시도도 단호히 거부합니다. 우리의 투쟁은 헌법에 따른 것이며, 정의와 평등을 요청하는 헌법의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선전 포고에 따라, 우리의 군사력인 EZLN에 다음과 같이 명령합니다.

첫째, 수도로 진격하여 멕시코 연방군을 무찌르고, 진격하는 동안 민간인을 보호하며, 해방된 국민이 자신의 정부를 자유롭게 민주적으로 선출할 수 있게 한다.

둘째, 모든 포로의 생명을 존중하고, 부상자는 모두 국제 적십자에 인도한다.

셋째, 모든 멕시코 연방군과, 외국에서 훈련을 받았거나 외국인에게 돈을 받은 정치 경찰(이들은 나라를 배반한 매국노로서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민간인을 억압하거나 학대·강탈하고,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모두 즉결 재판에 처한다.

넷째, 적군이지만 우리와 싸우기를 포기하고 EZLN 총사령부의 명령을 따르겠다고 약속한 사

람을 포함하여 우리 투쟁에 동참 의지를 보이는 모든 멕시코인과 함께 새로운 대오를 형성한다.

다섯째, 우리는 어떤 인명 소실도 피하기 위해 전투에 앞서 적의 총사령부에 무조건 항복을 요청한다.

여섯째, EZLN이 통제하는 지역에서 자연 자원이 약탈되는 것을 금지한다.

멕시코 민중에게

우리, 완전하고 자유로운 남자와 여자들은 우리가 선언한 전쟁이 최후의 수단임을 그러나 정당한 수단임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독재자들은 국민에게 선전 포고도 없이 대량 학살을 일삼는 전쟁을 벌여왔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자리와 토지, 주택, 식량, 의료 시설, 교육, 독립, 자유, 민주주의, 정의, 평화를 위해 투쟁하는 멕시코 국민이 주도하는 이 계획에 여러분의 과감한 참여와 지지를 요청합니다. 우리는 자유롭고 민주적인 우리나라를 위한 정부를 구성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기본적인 요구가 충족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선언합니다.

사파티스타 민족해방군의 반란군 대열에 동참하십시오.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사회헌장 (2012)

간략소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선언하며 이윤보다 소중한 노동의 가치를 복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선언은 안정된 노동의 권리, 자신의 노동조건을 스스로 지키고 만들어 나갈 권리,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유지하고 공동체의 삶을 누릴 권리는 노동자 모두의 권리이며 함부로 침해당할 수 없는 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선언은 궁극적으로 실업과 불안정한 고용을 반복해야 하는 불안정 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지켜내며, 그 권리를 실천적으로 제기하고,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선언입니다.

오늘 우리는 더 이상 침해될 수 없는 노동자의 권리를 선언한다.

더 많은 착취를 위해 노동자의 권리를 없애려는 자본의 욕망을 부추기는 비정규직 체제로 인해 모든 노동자는 불행하다. 비정규직으로 일하며 차별과 고용불안으로 고통받는 노동자, 해고되어서 이전의 관계로부터 강제로 단절되어버린 노동자, 일자리를 구하면서 불안정한 노동을 반복하는 노동자,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권리를 빼앗겨버린 이주노동자, 그리고 영세한 자본구조 때문에 안정적인 삶을 보장받지 못하는 영세사업장 노동자, 이 모든 불안정 노동자들의 삶은 점차로 힘들어진다. 정규직이라고 하더라도 불안정한 노동이 확산되는 현실에서는 계속 해고위협과 노동조건이 하락 압박,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한 경쟁으로 인해서 마찬가지로 불안하고 힘들다.

경쟁으로 관계는 파괴되고, 차별로 노동자의 자부심은 무너지며,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으로 인간 존엄성이 훼손된다. 이런 현실을 변화시키려고 나서는 순간 계약해지라는 이름으로 해고되고 생존의 위협에 시달린다. 노동자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하거나 침묵한다. 이런 침묵 속에서 노동자들의 권리는 무너져갔다.

비정규직 체제 안에서 우리가 노동자의 권리를 선언하는 것은 이윤보다 소중한 노동의 가치를 복원하기 위해서이다. 우리는 일하는 이들의 권리를 당당하게 선언함으로써, 큰 힘을 갖고 있지만 침묵과 순응으로 비정규직 체제를 용인해왔던 우리의 비겁을 벗어버리고자 한다. 자신만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나서며 정작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오히려 침묵을 강요하는 이들을 우리는 믿지 않는다. 노동자의 권리는 스스로의 투쟁으로만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이다. 이는 자신의 몸을 불살라 노동자의 길을 연 전태일 열사의 정신과, 죽음의 길 끝에서도 비정규직 철폐의 의지를 놓지 않았던 비정규직 열사들의 의지를 따르겠다는 선언이다.

오늘 우리가 선언하는 안정된 노동의 권리, 자신의 노동조건을 스스로 지키고 만들어 나갈 권리,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유지하고 공동체의 삶을 누릴 권리는 노동자 모두의 권리이며 함부로 침해당할 수 없는 권리이다. 비록 비정규직 체제로 인해 갈라지고 때로는 반목하기도 하지만 모든 노동자는 권리를 향한 도정에서 단결하고 연대할 수 있음을 안다. 일하는 모든 이들이 연대할 수 있다면,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우리의 발걸음은 단지 일부 노동자들이 정규직이 되는 데에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모든 노동자들이 권리가 존중되고, 모든 이들이 평등하게 노동하며, 자율적인 노동과 타인과의 협력을 만드는 세상으로 나아갈 것이다.

1. 안정된 고용은 노동자의 권리이다. 해고에 대한 두려움이 삶을 파괴한다. 계속 일하기를 원한다면 누구라도 계약해지 당하지 않고 일할 수 있어야 한다.
2. 차별은 노동자의 존엄을 파괴하고 무기력하게 만든다. 직무나 고용형태, 성별과 국적, 연령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되며, 특정한 성과 연령을 비정규직 일자리로 내몰아서도 안 된다.
3. 비정규직 일자리라는 이유로 낮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일의 자율성을 빼앗아 시키는 대로만 하게 하거나, 보조업무만 하게 하거나 다른 이들의 일을 함부로 떠넘겨서도 안 된다.
4. 진짜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노동자를 고용해서 이윤을 얻으려는 자는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하고,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이들은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5. 권리를 찾고자 하는 이들 모두가 노동자들이다. 특수고용노동자, 문화예술노동자, 가사노동자, 실업자와 구직자, 해고자 모두 노동자로서 자주적으로 단결하고 투쟁할 권리가 있다.
6. 누구나 생활할만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최저임금이 생활할만한 임금으로 인상되어야 하며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을 넘어서는 임금을 받아야 한다.
7. 노동시간에 대한 권리가 있어야 한다. 적정한 휴가와 휴식시간을 누리고, 원하는 시간에 일할 수 있어야 한다. 사람이기 때문에 회사가 원하는 시간에 맞춰서 살 수는 없다.
8. 노동자는 죽지않고 다치지 않고 일할 권리가 있다. 유해하고 위험한 업무는 안전장치를 해야지 비정규직을 투입하면 안 된다. 위험하다고 생각할 때 언제라도 작업을 중지할 수 있어야 한다.
9. 건강을 위협할 정도의 장시간 노동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 죽음을 부르는 야간노동과 24시간 노동, 강제잔업과 특근은 없어져야 한다.
10. 공간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노동자는 업무에 필요한 공간이 있어야 하고, 쉴 공간도 있어야 하며 밥 먹을 공간도 있어야 한다. 그 공간에서 노조 활동도 할 수 있어야 한다.

11. 호칭은 그 노동자에 대한 존중을 보여준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함부로 이름을 부르거나 반말을 하거나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면 안 된다.
12. 노동자는 노동권에 대해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자신의 업무와 고용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제공받고 노동통제구조에 개입하고 바꿀 권리가 있다.
13. 근로기준법과 사회보험은 노동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권리이다. 근로기준법이나 사회보험 적용에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 실업을 당했을 때 실업부조도 제공되어야 한다.
14. 일자리를 구하고자 할 때 공적인 고용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민간파견업체에 돈을 내지 않고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고용안정센터 등 공적인 고용서비스를 확충해야 한다.
15. 고의가 아닌 모든 손실비용은 사용자가 책임져야 한다. 과적벌금, 손해비용을 노동자들에게 함부로 떠넘겨서는 안 된다. 대납제도도 없어야 한다.
16. 노동자는 풍요로운 문화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다.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시간과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17. 비정규직도 스스로를 대표할 권리가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향상하고 우리의 권리를 이야기하고 교섭하는 모든 권한은 비정규직 노동자 스스로에게 있다.
18. 노동자들은 위계와 경쟁을 거부하고, 같은 처지의 노동자들과 단결하고 투쟁하고 연대하고 정치적으로 나설 권리가 있다. 이것은 어떤 이유로도 제한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인권관련 추천도서 목록 및 추천 글

● 인권일반

[인권을 외치다: 가장 낮은 가장 약한 사람들의 열망으로 바뀌은 인권의 역사]

저자 류은숙 | 푸른숲

<세계 인권 선언>,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미국 <독립 선언서> 등 인권의 기념비가 된 문헌들을 소개하면서 문헌이 담고 있는 '모든 사람의 권리'란 어떤 맥락에서 등장하게 되었고 어떤 정치적인 목적과 한계가 있었는지, 그리고 선언은 역사를 어떻게 바꿨는지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다.

[조효제 교수의 인권 오디세이: 다시 인간답게 살 권리를 묻는다]

저자 조효제 | 교양인

이 책은 인권, 다시 말해 '인간답게 살 권리'의 참뜻을 찾아 세계 곳곳을 탐사한 지적 오디세이의 기록이다. 이 길을 따라가다 보면 끊임없는 투쟁 속에 지평을 넓혀 온 인권의 파란만장한 역사를 만나게 되며, 인권이 21세기 새로운 유형의 편견과 억압을 격퇴할 수 있는 진정한 무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인권의 발명: Inventing Human Rights]

저자 린 헛트 | 역자 전진성 | 돌베개

이 책에서 저자는 오늘날 우리가 관습적으로 받아들이는 인권의 역사를 독특한 문화사적 관점으로 서술한다. 인권은 어떤 역사적 맥락에서 탄생했는가? 그것은 어떤 과정을 거쳐 우리의 정신과 일상 속에 자연스러운 것으로 자리 잡았는가? 저자는 인권이 18세기 계몽주의 시대에 기원을 두며 '공감'이라는 새로운 감각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했다고 주장한다.

● 차이차별

[수신확인, 차별이 내게로 왔다: 평범하지 않지만 평범한 소수자들의 이야기]

저자 몽, 김준우, 허오영숙, 김일란 | 오월의봄

미혼모, 트랜스젠더, 레즈비언과 게이, 이주자, 청소년과 장애인, 비정규직 노동자...

인권운동사랑방이 소수자들을 만나고 듣고 기록하고 이야기로 재구성하다.

차별이 일어나는 삶의 틈새에서 전송된

다르면서도 닮은 당신과 나, 우리의 이야기

[페미니즘의 도전: 한국 사회 일상의 성정치학]

저자 정희진 | 교양인

《페미니즘의 도전》에서 여성학자 정희진은 ‘여성의 눈’으로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을 새롭게 들여다볼 것을 요청한다. 이 책에서 정희진은 가정폭력, 성과 섹스의 문제, 성판매 여성 문제, 군사주의 문화, 동성애 등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된 여러 이슈와 사건들을 여성의 시각에서 재해석한다. 찬성 아니면 반대라는 단순한 이분법적 시각을 뛰어넘는 정희진의 새로운 재해석은 새로운 발견, 새로운 각성을 낳는다. 나아가 저자는 여성과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성판매 여성 등 오랫동안 소외당해 온 우리 사회의 ‘다른 목소리’들이 서로 경쟁하고 소통하고 공존하는 세상을 꿈꾼다. 페미니즘은 투쟁과 쟁취가 아닌 협상과 사유, 공존과 상생의 길이다.

● 어린이·청소년과 교육

[인권, 교문을 넘다: 학생인권쟁점탐구]

저자 배경내, 공현, 박민진, 오혜원, 정주연, 조영선 | 한겨레에듀

인권활동가와 인권교육 관계자들이 청소년들과 호흡을 같이하며 쓴 이 책은 학생인권 논쟁에서 찬성 쪽에 서 있다. 하지만, 개발 과정이 말해 주듯이, 저자들은 주장을 앞세우지 않는다. 이들은 답하기보다 묻는다. 당연하다고 여겨져 온 전제들이 정말로 당연하냐고 묻는다. 그리고 각 주장들과 논거의 관계가 타당하고 건전하냐고 묻는다. 각 쟁점과 관련해 저자들이 던지는 수많은 질문에 힘들게 답해 가다 보면, 학생인권을 둘러싼 논쟁의 지형도가 저절로 머릿속에 그려진다. 그리고 학교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인간관계에 대한 새로운 상상이 가능하다는 희망이 마음속에 움트게 된다.

[등글등글 지구촌 인권 이야기]

글 신재일 | 그림 유남영 | 풀빛

이 책은 역사적인 이야기를 바탕으로 사람이 누려야 할 기본 권리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인권이 우리의 것이 되기까지, 이것을 얻기 위해 노력한 옛 선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슬프고 또,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역사의 이야기를 쫓다보면 옛날 계급으로 신분을 나눴던 시절부터 ‘무한 경쟁의 시대’라고 일컬어지는 21세기 현재까지, 사회가 어떻게 변화되고 확립되었는지 알게 됩니다. 아이들에게 인권의 단면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포괄적이고 구체적으로 들려주기 위해 민주주의라든가 비정규직, 빈곤층, 국가의 역할, 세계화, NGO의 역할,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주제로 엮었습니다.

[다른 게 틀린 건 아니잖아?]

저자 류은숙 | 양철북

이 책은 23년 동안 인권 운동을 해 오면서 저자가 직접 겪고 느낀 사회의 차별과 거기에 시민들이 저항한 기록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인권에 관한 재미있고 다양한 에피소드와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자 용기를 낸 시민들의 발자취를 통해 어린이들이 만들어가야 할 다양성이 존중되는 아름다운 공동체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곰곰이 생각하게 한다.

● 노동안전, 안전

[노동자, 쓰러지다: 르포, 한 해 2000명이 일하다 죽는 사회를 기록하다]

저자 희정 | 오월의봄

사람의 목숨이 돈으로 계산되는 사회, 안전에 대한 투자가 손익계산서 앞에서 무력해지는 사회, 더 가난하고 더 힘없는 사람들에게 위험이 전가되는 사회에서 저자는 왜 사람들이 일하다 다치고 병들고 죽고, 그럼에도 계속 죽도록 일을 하는가라는 질문을 품고 현장을 파고들었다. 조선소와 건설 현장, 코레일과 KT, 우체국과 택배, 쿠팡서비스와 배달, 자동차 공장과 중소기업,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산업 전반의 현장에서 산업재해 문제를 취재했다. 한 해 2,000명씩 일하다 죽는 사회의 구석구석을 들추고 있는 아픈 기록이자 ‘안전’의 자리에 ‘이윤’이 들어선 한국 사회, 탐욕의 재난이 덮친 한국 사회의 이면을 살살이 들추는 분노의 기록은 그렇게 책으로 묶였다.

[사람 냄새 : 삼성에 없는 단 한 가지]

김수박(만화가) 저 | 보리

“꽃이 질 때쯤 되면 최고의 향이 나거든. 사람도 똑같애. 사람은 나이가 먹을수록, 늙을수록 사람 냄새가 나는 거야.”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던 딸을 백혈병으로 떠나보낸 황상기 씨의 말이다. 황상기 씨는 사람도 꽃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사람만의 향기를 가진다고 한다. 나이를 먹으면, 다른 사람이 하는 말에 귀기울일 줄 알고 그 얘기를 들어주는 것도 사람에 대한 예의라고 말한다. 그러나 딸을 잃게 만든 그곳, 삼성에서는 자기 회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도 이들이 외치는 소리에 귀기울이지 않는다. 바로 그 한 가지, 사람 냄새가 없기 때문이다.

[대형사고는 어떻게 반복되는가: 세월호 참사 이후 돌아본 대형사고의 역사와 교훈]

저자 박상은 | 사회운동

수단과 방법이야 어떻든 많은 이윤을 남기려 하는 기업이 있고, 그 기업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민영화 정책을 강행하는 정부가 있다. 《대형사고는 어떻게 반복되는가》는 지난 20년 동안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너나없이 소리 높여 외친 ‘규제완화’와 ‘민영화’가 세월호를 침몰시켰다고 진단한다. 인간의 생명과 존엄, 자유와 평등, 역사와 문화는 경제적 효율성에 종속되는 부차적인 고려 대상일 뿐이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세월호 참사는 훨씬 오래된 역사를 가진 사건이다. 따라서 지난 20년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성찰 없이 안전한 사회로 나아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떠나보내는 길 위에서 : 대형 참사 유족의 슬픔에 대한 기록]

저자 노다 마사야키 | 역자 서혜영 | 펜타그램

『떠나보내는 길 위에서』는 520명이 사망, 항공사고 사상 최악의 참사로 기록된 일본항공 추락 사고, 수학여행 중이던 수십 명의 일본 학생들이 희생당한 상하이 열차사고 등 대형 참사 유족의 슬픔에 대한 기록이다. 사랑하는 대상을 상실한 살아남은 자들이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지, 슬픔을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대응과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소중한 경험과 조언들이 밀도 있게 담겨 있다.

● 세월호 참사

[금요일엔 돌아오렴 : 240일간의 세월호 유가족 육성기록]

글 416 세월호 참사 기록위원회 작가기록단 | 그림 김보통 | 창비

416 세월호 참사 시민기록위원회 작가기록단(대표 김순천, 이하 작가기록단)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직후부터 그해 12월까지 단원고 희생학생 유가족들과 동고동락하며 그중 부모 열세명을 인터뷰하여 이 책을 펴냈다. 이 책은 기존의 언론매체가 보도하지 못한 유가족들의 애타는 마음, 힘없는 개인이 느끼는 국가에 대한 걱정적인 분노와 무력감, 사건 이후 대다수 가족들이 시달리고 있는 극심한 트라우마 등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중요한 기록이다.

[세월호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 철학의 물음]

저자 이충진 | 이학사

세월호를 제대로 바라보기 위해 이 책이 택한 접근 방식은 세월호 참사 ‘이전’과 ‘당시’와 ‘이후’를 전 방위적으로 돌아보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무엇이며, 사건 당시 일어났던 수많은 일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이며, 침몰 이후 드러난 우리 사회의 민낯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앞으로의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숙고해보는 것이 이 책의 큰 틀이다.

[세월호를 기록하다 : 침몰·구조·출항·선원, 150일간의 세월호 재판 기록]

저자 오준호 | 미지박스

『세월호를 기록하다』는 세월호 재판의 법정 기록이며, 법정 기록을 바탕으로 세월호 사고를 재구성한 결과물이다. 또한 이 책은 무엇보다도 객관적인 사실 관계를 밝히는데 초점을 두고 정리한 책이기도 하다. 저자는 5개월간에 걸쳐 33차례 이루어진 세월호 공판을 방청하면서, 수만 쪽의 증언과 증거 자료, 피고인, 검사, 변호인 사이의 공방에서 드러난 것을 바탕으로 사고의 원인을 밝혔다.

르포르타주 작가이기도 한 저자는 사고 당시 배 안팎에서 있었던 일을 생생한 다큐멘터리로 재구성해 독자가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처럼 서술했다. 선수와 선미, 좌현과 우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승객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고, 조타실과 기관실의 선원들은 어쩌다 가장 먼저 탈출했으며, 대공(對空) 마이크가 장착된 123정의 해경 대원들은 왜 그토록 무능했는지가 이 책에서 낱알이 드러난다.

416인권선언 추진단 명단

이름	소속	인권선언은 000이다
강동진	빈곤사회연대	삼시세끼
강문대	민변 노동위원회	칼(416 전후를 가르므로)
강미영	어린이도서연구회	변화의 시작
강용주	광주트라우마센터	삶과 기억
강은지	국제민주연대	나를 주저앉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힘
강인호	안산시시민대책위	행동
강정미	안산마을교육공동체연대포럼	대일밴드
강지하	트래피스트수다회	의지
강희영	여성환경연대	숙제
고덕원	지구맘모임	생명을 생명답게 하는 일
고석	재난안전가족협의회	안전바로세우기
고소란	섬돌향린	인간다움의 표현
고은	화정감리교회(안산)	이 땅의 기초를 다시 쌓는 일
곽이경	민주노총	존엄한 인간의 실천
구용기		인류평화
구중서	평화바람	연어
권명숙	금속노조 인천지부	햇빛
권영은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걸음
권하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나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나와 우리의 삶을 위한 외침
권현수	성공회대학교	침묵 깨기
기연희	만화가	안전사회
김경애	용인촛불	삶, 자기삶의 결정권
김경화		앞만보고 전력질주 하던 것에서 멈춰서 나를, 다른이를 둘러보는 것
김경환	동녘교회	평화와 정의의 길
김광민	노란 책갈피	새로운 세상을 위한 내딛음
김광이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존엄,안전,장애,	생명권
김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우리모두의 책무이며 권리
김기원	변화를 위한 외침	유엔인권정책센터
김다현	열린사회은평시민회	맞잡은 손
김대권	아시아의친구들	쌈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흔들림없는 우리들 의지의 표현
김동규	서강대 철학연구소	사랑과 연대의 실천
김두현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아이들의 안전한 세상
김명기	사회민주당창당준비모임	생명수
김명원	서울대 민주동문회	인간 존엄

김명희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씨앗
김미선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황금률
김미화	칠보촛불모임	최소한의 의무와 권리
김민경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나에게 인권이란 평등이다.
김민수	청년유니온	마지노선
김민재	더 나은 학교를 위한 학생 공동 행동	정의 그 자체
김병훈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사람
김상운	진보평론	장치화
김상화	부산독립영화협회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 기본
김서형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또다른 기억법
김선우	세월호참사대구시민대책위	생명
김성균	서울대학교	인본주의의 수호
김성욱	4.16가족협의회 희생교사 부모	
김성이		실존
김성호	서울동부비정규노동센터	길잡이
김성희	한살림연합	최소한의 염치
김수영	리멤버0416회원	내 양심
김숙자	정토회	기본선
김승섭	고려대	최소한의 예의
김애화	개인	좌우명
김연지	엄마의 노란손수건	생명보다 이윤을 중시하는 잘못된 사회를 향한 일침
김영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존엄성
김영희	주부	나와 너 모두 소중한 사람입니다.
김예니	416법률지원센터	마땅히 해야할 일
김용휘	천도교 한울연대	생명의 세상을 여는 첫걸음
김우	4.16.마포모임	밥과 물
김운하	목회자	생명부여
김윤기	노동당 대전시당 위원장	씨앗
김이종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겠다는 마음과 행동
김일란	연분홍치마	평화로운 삶
김일수	상주모임(평화인권사랑방)	공동체
김일현	세월호원주대책위	목숨
김재연	없음	반성문
김정민	마더뮤직	양심
김정해	세월호416대외협력광화문 팀장	국민력
김종민	시흥촛불	머릿돌
김주현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동해시민모임	삶의 권리
김지예		당연하게 누릴 최소한의 것

김지훈	아산시민연대	잊지 않는 것
김진	세이브더칠드런	기본권
김진열	프리랜서(독립다큐멘터리작업자)	아이들과의 약속
김진해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다시 살림을 향한 걸음마를 배우는 것
김창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국장	
김춘식	용인 바른정치시민모임	삶의 전환
김치환	노원나눔의집	내 삶의 주춧돌
김태현	안산민예총	나침반
김하은	동화작가	평화
김현이	청주노동인권센터	시작
김혜경	세월호를 기억하는 일산시민모임	약속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마중물
김희진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주춧돌
나명주	참교육학부모회, 4.16약속지킴이 도봉모임	삶의 방향
나영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세월호 천 개의 바람이 만드는 새로운 세상의 시작이다!
나영정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고심
난다	인권교육 온다, 청소년인권활동가	희미해지는 시간들을 잊지 않고 함께 기억하기 위한 한 걸음
날맹	인권교육센터'들'	안전의 재구성
남대희	유학 준비생	대한민국의 미래
남미옥	세기강양	당당함
남미자	경기도교육연구원	함께 걷는 걸음
남정우	세월호 참사 마산시민행동	
노순택	사진사	더 이상 침몰하지 않겠다는, 거부의 선언
덩야핑	진보네트워크센터	지금 여기의 세월호
도철	조계종 노동위	새롭게 태어나는, 새로운 인간이 되는것
두인	인권운동공간 활	디딤돌
들꽃	홍사단민족통일운동본부	생명존중
랑희	인권운동공간 '활'	성찰로 그리는 미래
레고	서울인권영화제	행동하는 기억
류은숙	인권연구소 '창'	죽은자와 산자의 대화
류하경	민변	
마이금	안산시민대책위공동대표	미래의 에너지
맹주형	천주교 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회	나에게 인권은 삶이다!
문경란	서울시인권위원회	등대
문규리	단국대	출발선
문도운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우리 사회의 전환을 위한 첫걸음

문성근	흥사단	더불어 함께사는 길
문종찬	서울동부비정규노동센터	연대
문희정	바람개비들이 꿈꾸는 세상	인간존엄의 가치적 실천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움직이자는약속
박동호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장	
박래군	인권중심사람 소장	시민 헌장
박병우	민주노총	세월호 진상규명의 초석
박상미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희망을 만들기 위한 외침
박상은	사회진보연대	안전에 대한 시민의 권리 선언
박성현	안산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복지관 네트워크 우리함께	진정한 봄
박세훈	고려대학교	기억투쟁
박소현		필수
박수경	4.16 마포모임	인간선언
박수연	국제민주연대	따뜻한 단호함
박영대	사단법인 올마이키즈	디딤돌
박영서	세월호를 기억하는 연세인모임 매듭	다시 일어섬
박영수	전교조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것
박영일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인간존엄
박영철	울산인권운동연대	내아이의 미래
박용규	전교조	인권은 올바른 삶이다
박윤기	안산도시공사 비정규직 노동조합	자연살이
박은희	세월호희생자가족	나 자신이 주인임을 알리는것
박이은실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인간선언
박종규	사회복지사	미래
박종범	세월호유가족입니다	국민 권리 찾기,인간존엄성 회복!
박주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생명선
박준도	사회진보연대	안전에 대한 시민의 권리장전
박진	다산인권센터	다른사회를 위한 약속
박진우	이주노동조합	기억
박현주	검은티행동, 광화문상황실, 우리동네청년회	옳은 목소리를 내는 것
박현희	희망꿈공주학부모회	내일을 위한 약속
박형준	호서대학교	의문
박혜영	노동건강연대	주춧돌
박호림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택시국회의)	새로운 사회를 위한 나침반
박홍진	노동당경남도당(마산시민행 동)	보편적이고 평등한 권리

박희인	세월호참사 대전대책회의 상황실장	안전과 생존
박희정	인권기록활동네트워크'소리'	우리가 함께 지향해야할 사회를 찾아가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이자 실천
박희진	서대문민주광장. 4.16서대문네트워크	사람
배미영	구속노동자후원회	표현의 자유
배보람	녹색연합	도전
배서영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존엄회복의 시작
배소영	구속노동자후원회	당연한 권리 주장
배영란	광화문 티비 자원봉사자	안전사회의 시작
배진교	대구귀어문화축제	생존권
백형록	민주노총 충주-음성지부	안전한 사회에서 살고싶다는 선언
백희정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정의로운 삶
변연식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눈물
산하	세월호를 기억하는 연세인들의 모임 매듭	부쉘진 질서를 다시 정립하는 것
새라	팔레스타인평화연대	소중한 것
서성민	민변	
성수빈		기본권
손어진	비례대표제포럼/영암청년공 동체	출애굽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건강하게 일할 권리와 안녕한 삶을 만드는 것
손창수	원주시민연대	국가미래를 여는 길
손희정	땡땡책협동조합	생명
송경상	성남세월호대책회의	생명존중
송정근	청소년의 아침	아이들의 부활
송주명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회의 회	새 대한민국 선언
송채림	이우고등학교인권동아리아 우름름	희망
수인	원불교 인권위원회	연대
신금석	구리남양주416약속지킴이	비틀린 세상을 향한 선전포고
신수경	새사회연대	존엄의 외침
신주옥	사무소LPW	필수적
신현웅	세월호참사대응서산시민행 동공동대표	미래
신현자	세월호 참사 부천대책위	약속
심미경	칠보산마을춧불	희망
심보선	경희사이버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시, 사회학	우리가 외면해온 질문들의 총합
아샤	다산인권센터	잊지 않겠다는 약속의 실천
아요	인권운동연대(대구)	무지개

안보영	시네마달	최소한의보루,살기위한
안영신	시민모임 즐거운교육상상	회복
안우춘	세월호 제천대책위	차별과 불의로 가득한 험한 바다에 길잡이 등대를 세우는 것
안장현	아산시의회	기본
양승미	광화문노란리본공작소	사랑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에너지와 탈핵 활동가	내마음
양일동	민족 예술인	생명.평화.인류보편 민주
양정모	더 나은학교를위한학생공동행동	미래
양한웅	조계종노동위원회	관세음보살
연제현	동녘교회	서로살림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의무
오김현주	4.16 마포모임(민중의집대표)	시작
오선희	세월호를 기억하는 인하인 모임	삶의 이정표
오세범	대한변협세월호특위	나침반
오세진	서울신문	사랑
오신영		다짐
오영주	천주교인 활동가	인권회복
우삼열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희망
유미조	건강마을협동조합	생명
유성애	오마이뉴스	아이들의 유언
유성태	의정부세월호대책회의	삶의 기초이자 기본
유재상	구리남양주4.16약속지킴이	정의의 실현
유해정	세월호 참사 작가기록단	새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
유현미	일리치모임	생명
윤대기	원불교 사회개혁교무단	
윤용배	한국진보연대와 교육희망네트워크에서 활동 중	구명조끼
윤종현	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	더불어삶
윤지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정표
윤지영	ODAWatch	인간성의 회복
윤희숙	한국청년연대	사람답게 살기
이가원	유엔인권정책센터	생명
이경이	어린이도서연구회	되살림. 성찰.
이계삼	밀양송전탑반대대책위	밀양할매할배들의 눈물을 닦아줄수있는것
이계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활)화산
이귀진	세월호천안시민대책위	사람이 되어가는 길
이근원	공공운수노조	삶의 변화다
이김춘택	창원촛불문화제팀	기억+'

이동슈	현장시사만화가	살기위한최소한의 행동
이명희	대구 달서 촛불	사람답게 살기
이문희	세월호참사 경주시민대책위	양심
이병은	참여하는사람들	자부심
이병천	강원대학교	인간과 시민의 존엄 선언
이병희	세종시 세월호 참사 대책위원회	생명
이보나	청도345kV송전탑반대대책위/대구녹색당 사무처장	지금 여기 당연히 있어야 할 권리
이보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당연한 권리
이사랑	(재)진실의힘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이소현	원당중	존엄
이승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	역사적 사명과 책임
이승원	성균관대학교 겸임교수	길
이승화	칠보산마을 촛불	416이전처럼 살지않기위한 외침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후 삶의 기준
이여울		앞으로의 희망
이영복	세월호참사 대전대책회의 공동대표	세월호를 인양하는 것
이영옥	사고에 대한 안전교육	메아리
이영주	민주노총	샘물
이용석	전교조 부천중등지회, 부천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노랑'	생존 선언
이용석	전쟁없는세상	미안함
이원재	문화연대	행동하는 기억
이원준	정의당 대구시당	지켜야 할 의무
이유진	녹색당	다짐
이윤아	고양시 세월호 실천 모임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다짐
이은정	천주교인권위원회	다양한 사람들의 살아있는 이야기
이재승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분기점
이재용	정의당 안산지역위원회	함께사는 삶
이정은	성공회대학교	존엄함의 확인
이종걸	한국계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부끄럽지 않도록 함께 하자는 소중한 약속
이종승	연극배우	최소한의 양심
이종화	민족문제연구소 전북지부	독립선언
이진숙	나누미지역아동센터/인권여행	한걸음
이진식	함께하는성주사람들(합성)	자유,정의,자신의안전을지킬권리
이창근	쌍용자동차지부	인권선언이생존인사회는미래가없다.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공운영위원장	기억투쟁

이현중	여수시민협의회이사장, 전교조	생명을 지키는 운동(생명지키미)
이현주	(사)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치유
이혜빈	청강대	자유
이혜정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당위
이호윤	전국대학민주동문협의회(전민동)	함께가는길
이호중	천주교인권위	주권자의 존엄성을 회복하기 위한 선언
이흥재		민주주의의 시작
임미경	개인	세월호의 진실이 밝혀지는 것
임종호	세월호 유가족	사람중심세상
장대전	기아자동차화성공장사내하청노동자	비인간들에게 인간이 되라고 하는 통첩
장동원	416가족협의회 생존학생학부모 대표	인간의 존엄
장병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존엄과 평등
장여경	진보네트워킹센터	세월호참사 이전과 달라지기 위한 출발
장옥주	세월호문제해결을위한안산 시민대책위 집행위원장	우리의 생명
장헌권	광주 기독교 교회협의회 ncc및 광주시민상주모임	사람답게 사는 길
장현철	의정부한겨레두레협동조합	참삶
장혜숙	세월호를기억하는일산시민 모임	정의
장훈교	연구협동조합 데모스	반성문
전명선	416 가족협의회	안전사회 만들기의 초석
전이루	장로회신학대학교	끈
전장호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기업의 이윤과 경제논리로 부터 나의 건강한 삶을 지키기위한 첫걸음
전재란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강북사람들	가만히있지않는것
전재영	대구지하철참사 희생자 대책위원회 사무국장	참사 유족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정경숙	일반개인	삶의길
정경원	춘천봉사활동인하대희생자 기념사업회	미래희망
정나위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	기억
정다와	유엔인권정책센터	
정선원	희망꿈공주학부모회	새로운 세상으로의 외침
정양희	흥성문화연대	산노을
정연구	청춘의지성(사월애)	희망
정영미	전교조 416특별위원회	투쟁
정영일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인권은 공기와 같은 것이다
정은주	한국인권재단	새롭게 써야할 역사

정의행	호남평화인권사랑방	진실
정인환		민주주의
정정훈	수유너머N	희망의 준비
정진섭	노원416약속지킴이	거듭남
정진임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약속
정현곤	사단법인 시민	시작점
정혜숙	세월호 유가족	공동선
제이	인권교육활동가	가장 절절한 외침
조경옥	공공교통네트워크에서 활동 중	도약을 위한 시작
조돈문	가톨릭대학교 사회학과	잊지 않음
조세종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아이들과의 만남
조연민	민변	
조연희	교육희망네트워크	반성문
조윤미	이윤보다인간을, 삼성노동인권지킴이이	약속과 행동
조장우	충북세월호대책위	생명보다 이윤이 우선인 잘못된 사회를 바꾸는 노력 중 하나
조주용	기독교대한감리회 동광교회	인권은좁은길이다.
조한경	민주노총강원본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조현수	청송군농민회	밥
지민주	노동가수 인권	사랑
지석연	대한작업치료사협회	인간다움'과 '자연회복'의 실천
진광수	고난함께	이정표
진명우	흥민통 청년위원회 들꽃	변화를 위한 발돋움
징검	두물머리&밀양의 친구들	함께 살자는 약속
채민	전북평화와인권연대	416 이전의 사회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외침
천기창	대구경북인권연대	416
최만정	아산시민연대	삶
최명선	민주노총	생존권
최민식	울산인권운동연대	저항의 다짐
최세진	모두 함께 잘 사는 사회에 관심있습니다	생명선언
최순화	416가족협의회	새로운 도전
최완욱	광주인권운동센터	땅의 함성
최원	건국대	사유 속에서의 행동
최은영		외침
최장훈	동국대 대학원 총학생회	투쟁
최재민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탈시설
최정민	전쟁없는세상	활동가들의 땀
최종진	민주노총 책임자처벌을 위해 투쟁합시다	국민의 의무

최준석	전공노 인권위지부장	영원함
최진협	한국여성민우회	진실규명을 위한 약속
최현국	예수살기 / 촛불교회	생명평화
최현모	인권재단사람	함께살
최현정	트라우마치유센터 사람.마음	고통받는 자를 향한 존중
최형숙	세월호강동대책위	생명이자 평화다
최홍조	의사	건강한 내일
탁가이버	애틀란타 세사모	주권선언
하승우	땡땡책협동조합	자기결정권
하준태	KYC(한국청년연합)	잊지 않으려는 노력
한가람	공인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모두가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의 외침
한미경	화성지역 약속지킴이	변화의 시작
한상균	민주노총 노동자서민살리기 총파업	생명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세상 그 자체
한석호	민주노총	사회연대
한인임	일과건강	미래를 위한 의무
한정석	온생명	내게 또 하나의 시작
한정욱	더 나은학교를위한학생공동 행동	해방,자유
한정태	경기광주교육포럼	외침
한준혜	희망꿈공주학부모회	생명
허성실	이화여대 레드카드	투쟁
허훈	진주시 노동당협	생명줄
현미향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안전하게 살기위한 최소한의 기준
현재순	일과건강	양심
형근	제천간디학교	당연한 권리를 찾기위한 행동
혜원	청소년활동기상청 활기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모두의 마음
호연	416연대 사무처	살기 위함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인권법	마중물
홍성표	아산시민연대	생활의 기본
홍승기	유엔인권정책센터	모두를 위한 것
홍영철	세월호 참사 대응 제주대책회의	새로운 미래
홍진원	강릉시민행동 사무국장 / 강릉4.16약속지킴이 위원	사회를 바꾸는 힘
후지이 다케시	역사문제연구소	아직 고민 중
Mr.봉이	416연대	개인의 생명